SECTION 3

예산절감 관련 자료

1. 예산절감 관련 기준 · 지침
2. 예산절감 관련 매뉴얼 · 서적 · 논문
3. 인터넷 웹사이트



1. 예산절감 관련 기준·지침

(1)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

- 담당기관 및 부서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통보일자 : 2008. 4. 4
- 문 의 처 : (02) 2100-4108~4113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경제살리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예산 10% 절감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본 기본계획은 자치단체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예산절감의 구체적 범위 및 추진방안,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예산절감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세부적 추진대책은 추후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각 자치단체가 작성한 예산절감 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간 예산절감에 대한 노하우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본 기본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정책과(2100-4108,4110,411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기본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에 따라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Ⅰ. 예산절감 개념 및 범위

① 개 념

- 예산의 편성·집행·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을 확보

- 재정지출 총액 자체를 단순히 축소하는「긴축재정」이 아니라,
  - 예산절감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전액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현안 사업 등에 재투자

② 범 위

- 「'08년 예산 집행 ~ '09년 예산 편성」에 이르는 재정운용 프로세스 전반의 예산절감 및 수입확충을 포함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대상
  - 기금,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등은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실적으로 인정

- 불용된 예산 혹은 초과 징수된 세입 등 세계잉여금을 모두 예산절감 실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 각 사례별로 세부 절감내역에 따라 능동적·적극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산절감 실적으로 인정

- 예산절감에 따라 신규 재원이 실제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민자유치 혹은 동일 예산으로 사업량·성과의 대폭적 증가 등 예산절감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 세부적인 절감내역과 객관적인 절감액 추계가 도출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절감 실적에 포함

  * 다만, 민자유치 실적은 예산절감액 합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표기하도록 하며 정성적 평가 실시 (지방 의견수렴 후 세부방안 결정)



〈예시〉 당초 500억의 예산으로 지방도 5km를 건설 예정이었으나, 신공법 도입,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계획보다 1km를 추가로 건설

→ 추가로 건설된 1km에 해당하는 100억 절감 효과

● 각종 공사·용역 계약 등 집행에 따른 낙찰차액은

- 계약방식 변경, 제도개선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경제살리기 등에 재투자한 경우 등은 예산절감 실적으로 포함



〈예시〉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공개경쟁계약으로 추진, 여러부서의 사업을 모아서 통합·일괄 발주, 최저가 낙찰제의 신규 적용 등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을 절감대상으로 하되, 법적·의무적 경비는 제외

- 절감대상 예산항목 및 절감비율 등은 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자체사업을 절감대상으로 하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조사업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이 사업의 성격상 절감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재투자 허용 등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협의 추진중 (시도비보조사업도 병행 검토)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확대는 단순히 세입추계와 실제 세입액의 차액이 아니라,
  - 징수율 제고 등 능동적·적극적 노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절감 실적으로 인정

-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사업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재원은 최종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자치단체에서 절감 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 다만, 시도비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시·도 차원에서 자체적 절감이 가능한 경우, 시·군에 재정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감 추진



〈예시〉 유사·중복된 보조사업의 통폐합, 인근지역간 복지·체육시설 등 공동활용 협의



참고 예산절감 기본구조도

경비/프로세스	'08년 예산집행상 절감(예시)	'09년 예산편성상 절감(예시)	절감재원 신규투자(예시)

			'08년 예산집행상 절감(예시)	'09년 예산편성상 절감(예시)
세출 구조조정	인력운영비		■ 조직 구조조정 및 신규증원 최소화 ■ 정원대비 현원 결원율 일정비율 유지	
	기본경비		■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 최소화를 통한 해외·국내여비 절감 ■ 시정간행물·유사홍보물 통폐합, 홈페이지 활용 사이버 홍보 활성화 ■ 에너지 절약 및 사무용품·우편요금 등 절약 ■ 관용차량 운영 정밀진단을 통한 차량유지비 절감	
	사업비		■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계약심사 기법을 적용 ■ 제도개선 및 각종 사업추진에 실효성이 낮은 연구용역 최소화 ■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마을회관, 체육관·운동시설 등 공동활용) ■ 공기단축을 위한 집중투자를 통해 실질 총사업비 절감 ■ 재정사업 자율평가,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 민간위탁사업 확대 및 민간참여 활성화 유도	
		예산배정	■ 사업물량 재조사 등을 통한 배정유보·감배정	
		계 약	■ 계약심사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원가심사 강화 ■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300억 이상 → 100억 이상) ■ 유사사업 통합 발주, 계속비 계약제도 등 적용	
		사업집행	■ 설계변경, 신기술·신공법 도입 등을 통한 절감 ■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목적외 사용금지 ■ 옥외행사 최소화, 교육원 등 자체시설 활용을 통한 행사경비 절감 ■ 각종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에 대한 민간보조금 절감 ■ 조직내의 전문인력 활용으로 설계비·연구개발비 절감	
		사후관리	■ 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활용한 세출구조조정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 집행잔액 등의 임의적 활용 제한	
수입확대	지방세		■ 세무조사 및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 ■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 편의 제공	
	세외수입		■ 유휴장비 민간임대, 공영 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수입 증대 ■ 청사내 주차장, 매점, 식당 임대확대 및 계약방법 개선 ■ 은닉 공유재산 발굴	

경제살리기

- 전통·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판로 확충 등 지원
-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금융·세제 지원
- 중소기업 물류 지원
- 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역특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향토산업 육성
-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 농어촌·낙후지역 도로정비

고용창출

-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 취업 촉진
-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을 통한 노인 일자리 확충
- 지역기업 필요인력 지원 및 양성사업

서민생활 안정

- 지역물가 안정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권 보호 강화

Ⅱ. 예산절감 원칙 및 중점 착안사항

① 5대 원칙

1.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목표와 실행계획 수립

2. 통상적·점증적 방법에 의한 기존의 예산절감이 아니라,
   ⇒ 구조적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으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행태·제도적 변화와 원가·비용 마인드 정착

3. 중앙 및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지시·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 중앙 – 자치단체, 자치단체 상호간 지속적 의사소통과 협력 추진

4. 단순히, 예산절감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두어 사업을 연기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 예산절감 계획·추진·평가 등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사례와 제도·시스템 변화를 도출하는데 초점

5.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 주민이 예산절감의 실질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절감재원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하여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등 도모

② 10대 중점 착안사항

1. 중앙부처-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간, 시·도와 시·군간, 자치단체내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낭비

2. 계약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입찰과정에서 계약방법·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원가에 포함시켜 높은 가격으로 계약함에 따른 낭비

3.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이나 시설·물품이 있는데도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낭비

4. 지역적 특색이 없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 난립으로 인한 낭비

5. 동일·유사한 연구용역 혹은 실제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으로 인한 낭비

6.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이용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청사·문화시설의 경쟁적 건립에 따른 낭비

7. 마을·주민회관, 체육관·운동시설 등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8. 민간이전경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낭비

9. 관행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함에 따른 낭비

10. 운용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적인 특별회계·기금의 난립·과다조성,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미흡에 따른 낭비

Ⅲ. 예산절감 목표 수립

① 목표 설정방식

- '08년 예산집행상 절감액과 '09년 예산 편성상 절감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목표액 설정

- 자치단체별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절감목표 및 실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 '08년 예산집행상 절감액과 '09년 예산편성상 절감액의 비율, 기본경비·인력운영비·사업비의 절감율 등 자율적 결정

- 자치단체별 (본청 및 시·군·자치구) 예산절감 목표 및 실행계획은 각각 당초 총계예산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 예산절감율 산정시에는 총계예산 기준 절감율 및 절감가능예산 기준 절감율을 동시에 제시
  - 자치단체별로 예산절감이 불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과 금액을 명시

  * 예산절감이 불가능한 경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계획 및 의견수렴을 거쳐 권고안을 제시토록 할 예정

- 시·도는 본청과 시·군·자치구의 예산절감액 합계와 '08년 시도별 순계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을 비교하여 시·도 전체의 예산절감율 산정

○○광역시 예산절감 목표 수립 예시

○ '08년 집행상 절감

- 본청은 총계예산 3조원 중 500억 (1.7%) 절감 목표
- 자치구는 총계예산 4조원 중 1,500억 (3.8%) 절감 목표
  → 총계예산 7조원 중 2,000억 (2.8%) 절감 목표

○ '09년 편성상 절감

- 본청은 총계예산 3.5조원 중 1,600억 (4.6%) 절감 목표
- 자치구는 총계예산 4.5조원 중 2,400억 (5.3%) 절감 목표
  → 총계예산 8조원 중 4,000억 (5%) 절감 목표

○ '08년 집행과 '09년 편성상 절감액 총액

- '08년 본청과 자치구를 합한 순계예산은 5조원
  → '08년 순계예산 5조원 중 6,000억 절감 (절감목표 : 12%)

구 분	종 합 ('08~'09)		'08년 집행절감		'09년 편성절감	
	'08년 순계예산	절감 합계 (비율)	'08년 총계예산	집행절감 (비율)	'09년 총계예산	편성절감 (비율)
광역시 합계	5조	6,000억 (12%)	7조	2,000억 (2.8%)	8조	4,000억 (5%)
광역시 본청			3조	500억 (1.7%)	3.5조	1,600억 (4.6%)
자치구 합계			4조	1,500억 (3.8%)	4.5조	2,400억 (5.3%)

Ⅳ. 예산절감액 산정

① '08년 예산집행상 절감액

- '08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과 실제 집행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 (사업 구조조정 + 집행상 효율성 제고)



〈예시〉 '08년 당초예산상 사업비가 100억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90억으로 구조조정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5억을 추가적으로 절감

→ 100억 – 85억 = 15억 절감

* 당초, 추경에 편성하려던 상한액내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지 않고, 그 재원을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절감으로 인정

② '09년 예산편성상 절감액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계속사업 등은 '08년 당초예산상 금액에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과 실제 편성된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



〈예시〉 '08년 국외여비가 100억, '09년 편성된 국외여비가 95억, 최근 3년간('06~'08) 총 예산의 평균 증가율이 6%인 경우,

→ { 100억 * (1 + 0.06) } – 95억 = 11억 절감

- 신규사업 등은 원가산정방식 등을 적용하여 절감한 금액을 자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복지회관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당초 5억원의 설계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관련 공무원들이 합동근무를 통해 직접 설계하기로 결정하고 예산 편성시 미반영

→ 설계비가 5억원 소요되는 근거를 동일한 면적의 다른 유사 공사의 사례 등을 활용하여 제시

Ⅴ. 절감재원의 활용

① 활용용도

- 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살리기 목적에 맞는 지역 현안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
  - 다만,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삭감된 사업 등에는 재투자 지양

* 절감재원을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민생안정 대책 등에 투자한 실적도 점검·평가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방향에 적극적 참여 유도

② 활용방법

- 원칙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재원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반영
  - 당초 계획보다 집행상 절감액이 증가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어려운 경우,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차년도 예산에 편성
  - 추경예산 편성 없이, 예산의 이·전용 및 변경사용만으로 절감재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제도를 적극 활용

- 일반회계 전출금이 주 재원인 특별회계·기금 등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감액하여 절감재원을 다른 분야에 재투자
  - 일반회계 전출금 외에 다른 재원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기금 등은 절감액을 여유재원으로 관리하고,
  - 중장기적으로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 등을 통해 적극적 재원 활용방안 강구

Ⅵ. 예산절감 지원 및 협조사항

① 행정안전부 지원방안

- 예산절감 지원 민·관 TF 구성·운영
  - 예산절감·낭비사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유형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자치단체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자치단체가 자체역량으로 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협의, 법령 개정 등 적극 지원

  예) 자치단체가 원가심사 강화, 신공법 적용 등 자체적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일정한 범위의 잔여재원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개정 협의 추진중

- 예산절감 실천 지원을 위한 매뉴얼 작성·공유

- 예산절감 및 경제살리기 투자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지방교부세 재원 활용)

  * 예산절감 실적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규모의 격차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

- 대표적 예산절감·낭비사례 공표, 언론 홍보 등 적극 추진

-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예산절감 관리기능을 보강
  - 계획수립·실적관리·평가 등 자동화, 절감재원 재투자 흐름 관리, 예산절감 노하우·사례 공유 등

② 자치단체 협조사항

- 예산절감 총괄부서는 각 사업부서가 능동적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예산절감과 관련한 제도개선 제안, 사례발굴 등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지원

Ⅶ. 추진일정

① 자치단체 예산절감 실행계획 수립·제출 (4.11, 4.18)

- '08년 예산집행상 절감 실행계획
  - 자치단체별 예산절감 목표, 우수사례, 재원활용방안 등 초안을 4.11일한 우선 제출
    * 4.15(화) 국무회의시, 지방예산 절감 추진상황 보고
  - 예산절감 세부내역 등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안을 4.18일한 제출
    * 4월말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시, 지방예산 절감 계획 및 우수사례 보고

- '09년 예산편성상 절감 실행계획
  - 총괄적 목표만 우선 제출하고, 예산절감 세부내역, 재원활용방안 등 전체 실행계획 작성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② 자치단체 예산절감 관련 권역별 의견수렴 (4월 ~)

- 예산절감 지원 TF가 예산절감 실행계획 수립상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추진

- 예산절감 우수사례 및 노하우를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하고, 자치단체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과제 발굴·협의

③ 예산절감 세부 추진계획 수립 (5월중)

-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절감 실적 인정범위 및 평가기준,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세부기준 마련

(2) (행정안전부) '09년 예산편성상 절감 추진계획

- 담당기관 및 부서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통보일자 : 2008. 9.
- 문 의 처 : (02) 2100-4108~4113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추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지방예산 절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통보('08.4.4)한 바 있습니다.

○ 이번에 마련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09년 예산편성상 절감을 추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절감 개념과 범위, 절감실적서식 등을 제시한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하신 의견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Ⅰ. 예산절감 개념 및 범위

① 개 념

-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타당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
  - 계속사업은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축소·폐지,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
  - 신규사업은 편성전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가산정방식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

- 절감된 재원은 경제살리기·서민생활안정·일자리 창출·물가 및 에너지 대책과 지역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

- 당초에는 과다하게 편성될 예산이었으나,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한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많이 반영될 부분을 좀더 적게 반영하는 것임
  - 예산규모를 총액적으로 전년도보다 일률적으로 적게 편성하는 것이 아님

    * '09년 예산편성시 절감을 하지 않았다면 2,000억으로 편성될 예산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원가산정방식 도입, 한도액이내 편성 등을 통해 1,900억원으로 편성했을 경우 절감액은 100억이 되는 것임 (이 경우, '08년 예산은 1,900억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음)

② 편성상 절감 범위

a. 연도별 계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09년에 사업이 완료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08년보다 예산이 단순히 줄어든 경우는 예산절감이 아님 (자연완료·감소)

   * 자치단체별 중기재정계획 또는 전년도 의회제출된 사업설명서 자료 확인 가능

   - 단, 계속사업 중 시행연도 첫해 또는 시행중에 집행상 절감으로 인해 '09년 사업비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는 절감으로 인정

b. 계속사업의 경우,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낭비요소를 점검하여 예산을 절감

   - 관행적으로 매년 유사한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비효율적·낭비적인 사업은 축소·폐지



〈예시〉 매년 민간단체에 지원되던 행사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규모를 축소하여 편성('08년 5억 → '09년 2억), 3억 절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지원예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사업비 편성에 반영 ('08년 1억 편성→ '09년 5천만원 편성, 5천만원 절감)

- 동일 목적의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예시〉 2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편성 (건전육성사업 5억, 청소년 선도활동사업 3억 → '09년 청소년건전육성 6억, 2억 절감)

'08년에 2개로 추진한 문화·체육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편성 ('08년 2개 편성 사업비 10억 → '09년 1개사업 편성 8억, 2억 절감)

- '09년 예산편성 이전에 감사원 등 중앙·상급기관, 지방의회 등에서 유사·중복사업, 추진방식 등에 있어 문제가 지적된 사업의 축소·폐지〔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징계)가 병행된 사업 혹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지적사업 등은 절감이 아님〕



〈예시〉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축소('08년 10억 → '09년 8억, 2억 절감)

- 제도개선,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을 통한 재정소요 절감



〈예시〉 자치단체 직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비 절감 ('08년 10억 → '09년 8억, 2억 절감)

- 집중 투자 또는 조기 투입을 통한 공기단축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비 절감

※ 중기재정계획('07~'11년)상 사업비 반영 여부 확인이 가능



〈예시〉 '08년~'10년 계획중인 사업(총사업비 100억 : '08년 30억+'09년 40억+'10년 30억)에 대해 '09년에 60억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 10억 절감 (70억→60억)

'09년~'10년 2년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예정('09년 30억, '10년 20억)인 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을 '09년에 완료하고자 45억으로 편성, 5억 절감(50억 →45억)

- 지방채차입금을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던 중 상환 미도래분에 대해 조기에 상환하여 이자분 예산 절감



〈예시〉 '09년 이후 상환액에 따른 이자가 5억이나, '09년도에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이자를 3억만 상환하게 될 경우 2억 절감

- 고금리 지방채무 잔액을 저리(低利)로 차환하는 방법을 통해 이자분 예산 절감



〈예시〉 연이율 5%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던 중 저리(3.5%)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통하여 1.5% 이자분에 대한 편성상 절감

- 전년도와 대비하여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이 동일하거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



〈예시〉 전산장비 리스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대비하여 단가조정을 통해 예산 절감('08년 10억 → '09년 12억이 반영예정이었으나 9억만 반영, 3억 절감(12억-9억))

- 편성한도액(상한액)이 정해진 경우, 당초예산에 한도액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차액을 절감액으로 인정



〈예시〉 '09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이 10억이나 8억만 편성한 경우, 2억 절감

'09년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3억이나 2억만 편성한 경우, 1억 절감

- 인력운영비의 경우, 총액인건비 한도액내에서 편성한 경우 차액을 절감으로 인정



〈예시〉 '09년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400억이나 380억만 편성한 경우, 20억 절감

* 단, 절감실적을 위해 당초예산에는 총소요재원 보다 적게(50% 반영 등) 편성하고 이를 실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평가시 패널티 부여 예정)

③ '09년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가산정방식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

- 절감한 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산정내역은 구체적으로 제시가 가능해야 함
- 통상적으로 외부용역비 등으로 편성될 사업이었으나 자체 합동설계반(또는 감리단) 등을 통해 직접 설계(감리)하기로 결정하여 예산을 절감



〈예시〉 복지회관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당초 5억원의 설계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관련 공무원들이 합동근무를 통해 직접 설계하기로 결정하고 예산편성시 미반영, 5억 절감

- 연구용역비 등 편성 전에 자치단체별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비를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



〈예시〉 연구용역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자치단체 내부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통한 절감 (사업부서 요구 10억 → 예산부서 조정 8억 → 위원회에서 7억으로 조정, 1억 절감)

- 자치단체별로 '09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사업을 재검토하여 공동건립, 통합시행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



〈예시〉 '09년에 경로당을 5개 지역에 50억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5개 지역을 3개 지역으로 통합·설치하기로 하고 30억만 반영, 20억 절감

'09년에 시설별로 각각 시행될 예정이던 하자검사(3억)와 안전진단(2억) 사업을 병행시행하고자 예산을 4억으로 통합 편성, 1억 절감

- 통상적으로 편성될 사업비 이었으나, 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해 예산을 절감



〈예시〉 산업단지 조성공사시 당초에는 100억으로 편성될 예산이었으나 금년도에 '09년 예산편성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무상으로 토사를 사용토록 하여 토사비용 10억을 줄여 90억만 예산편성

④ 국고보조사업은 편성상 절감액을 작성하지 않음

- 다만, 시·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사업비 절감이 가능

  *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00사업'을 '08년 예산이 100억이었으나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80억만 편성한 경우 절감액은 20억임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일률적으로 시·도비보조사업을 삭감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 축소·폐지로 인해 주민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도비보조사업도 편성상 절감액을 작성하지 않음

⑤ 기타사항

- 예산절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대상으로 하되, 기금,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의 실적도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실적에 포함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증대는 편성상 절감실적에 미포함

Ⅱ. 예산절감 실적 작성

① 절감관련 유의사항

- 자치단체별로 당초 수립한('08.4) 계획을 기준으로 추진하되 지역별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정 가능

  * 반드시 자치단체별 '08년 집행상 절감계획과 '09년 편성상 절감계획이 '08년 예산 규모의 10%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

- 모든 사업의 예산을 획일적인 기준(예: 10%)에 의거 전년도(또는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을 적용한 추정예산)보다 삭감하여 편성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절감의 비목(편성목·통계목) 및 절감률 등도 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결정 추진

- 예산절감의 취지는 불필요한 일을 없애고,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자는 것으로, 실적을 위해 요구단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지도 관리

② 절감실적 작성 방법

-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08년 최종예산 기준과 '09년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확정된 수치를 비교하여 절감액을 작성
  -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또는 지방의회)에 요구한 예산안과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아님



〈예시〉 '○○사업(세부)' 과 '△△사업(세부)' 의 '08년 당초예산 합계 10억, 최종예산 합계 13억이며, '09년 편성시 사업 재검토를 통해 의회에 12억으로 요구하여 11억으로 확정된 경우 절감액은 2억임 (13억→11억)

자치단체 직영('08년 10억)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의회에 '09년 예산을 8억으로 요구하여 의회에서 7억으로 확정된 경우 절감액은 3억임 (10억→7억)

  - 집중 투자(또는 조기 투입)를 통한 예산절감의 경우 연도별 투자금액에 대해 '중기재정계획' 수치를 통해 예산요구 과다여부를 판단하고, 별도로 산정된 경우는 산정내역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 신규사업 중 연구용역 등 자체심사위원회 사전심사를 통한 절감은 사업부서 요구액을 예산부서에서 1차 조정한 내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절감된 경우에만 인정



〈예시〉 연구용역비 편성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10억을 요구 → 예산부서에서 9억으로 조정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8억으로 조정된 경우 1억을 절감으로 인정

- 편성한도액(상한액)이 있는 경비는, '09년 편성한도액(상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절감액을 작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편성상 절감기준은 '09년 한도액임('09년 한도액이 10억이나 8억만 편성한 경우 2억이 절감액임)

- 경비성격(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업비, 재무활동)별로 자연완료·감소, 계속사업, 신규·증액,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예산편성액과 절감액을 작성

- 자연완료·감소는 연도별 계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09년에 사업이 완료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08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경우이며, 절감액은 없음
- 계속사업 '08년에 추진하던 사업으로 예산절감이 가능
- 신규·증액은 '09년에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08년 계속사업을 단순히 증액한 경우는 절감액이 없으나 '집중 투자' 등의 경우에는 절감이 가능
-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보조사업(시군구의 경우)는 편성상 절감액이 없음

예산편성 및 절감 작성 예시(기초자치단체)

□ 예산편성 현황

구분			'08년 예산 (최종예산)	당초 편성될 '09년 예산 (a)	최종확정된 '09년 예산 (b)	절감액 (a-b)	비고
계			2,310억	2,434억	2,273억	161억	
세출절감	인력운영비		310억	330억	320억	10억	
	기본경비		80억	79억	78억	1억	
	사업비	자연완료·감소	100억	50억	50억		
		계속사업	450억	450억	400억	50억	
		신규·증액	450억	700억	600억	100억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 포함)	850억	750억	750억		
	재무활동	신규·증액	70억	75억	75억	0	

□ 예산편성 및 절감내역 설명 : 총 절감액 161억

〈인력운영비〉

○ **절감액 10억**

- '08년 예산은 310억이며, '09년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330억 이었으나, 320억만 편성 (절감액 10억)

〈기본경비〉

○ **절감액 1억**

– '08년 예산은 80억이며, '09년 예산은 78억으로 편성했으며, 이중 '09년에 관서운영 국내여비를 예산절감 동참 차원에서 '08년 총액보다 적게 편성('08년 3억 → '09년 2억, 1억 절감)

〈사 업 비〉

○ **자연완료·감소 : 절감액 없음**

– '08년 사업중 일부 사업(100억)이 '09년도에 자연적으로 감소 (완료 또는 마무리)되어 예산이 줄어듬(50억)됨

○ **계속사업 : 절감액 50억**

– '08년 사업중 일부 사업(450억)을 상호 통합, 축소, 폐지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계속 사업 예산을 절감(50억)

○ **신규·증액 : 절감액 100억**

– '09년에 사업을 신설(100억)
('08) 최종예산 0억 → ('09) 당초예산 100억

– '08년 사업중 일부 사업(450억)의 사업비를 증액(50억)
('08) 최종예산 450억 → ('09) 당초예산 500억

– '09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중에 자체 합동설계반을 통한 설계비 절감, 연구용역비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한 절감, 한도액보다 적게 편성 등 신규사업 절감액 100억

○ **국고 및 시·도비 보조사업(지방비부담 포함) : 절감액 없음**

〈재무활동〉

○ **신규·증액 : 절감액 없음**

– '08 지원된 예산액(70억) 보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규모를 일부 증액하여 편성 (75억)

Ⅲ. 행정사항

① '09년 예산편성상 절감계획 통보 (행안부→시·도)

- '08. 9월초 예정 (예산절감 매뉴얼에 포함)

② '09년 예산편성상 절감실적 제출 (시·도→행안부)

- 제출기한 : '09. 1. 20(화)
- 제출방법 : 시·도 본청이 총괄, 시·군·구 절감실적까지 포함하여 제출
- 제출내역

1. 「'09년 예산편성상」 절감실적 (총괄분 : 시·도 본청 + 시·군·구)
2. 「'09년 예산편성상」 절감실적 (시·도 본청분, 시·군·구 총계분, 시·군·구별)
3. 「'08년 순계예산 대비」 시·도 종합 절감계획·실적
   (총괄 : 시·도 본청 + 시·군·구)
4. 「'09년 예산편성상」 절감 세부내역 (총괄 : 시·도 본청 + 시·군·구)
5. 「'09년 편성상 절감재원」 재투자 사업 (시·도 본청, 시·군·구)
6. 기능별 「'09년 예산편성상 절감액 및 재투자액」 분석
   (총괄 : 시·도 본청 + 시·군·구)

① 「'09년 예산편성상」 절감실적 (총괄분 : 시·도 본청+시·군·구)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예산 (최종예산)	당초 편성될 '09년 예산 (a)	최종 확정된 '09년 예산 (b)	절감액 (a-b)	비중
합 계(a+b)							100%
세출 절감	계(a=c+d+e+f)						%
	인력 운영비	소계(c)					%
	기본 경비	소계(d)					%
	사업비	소계(e)					%
		자연완료·감소					
		계속사업					
		신규·증액					
		국고보조사업					
	재무 활동	소계(f)					%
		자연완료·감소					
		계속사업					
		신규·증액					
		국고보조사업					
예 산 외		계(b)					%
		자연완료·감소					
		계속사업					
		신규·증액					
		국고보조사업					
민자유치		계					
		예산절감					

* 증감액과 절감액이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보조사업도 절감액을 미작성
* 예산외 : 기금,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사업량·성과제고
* 민자유치를 통한 예산절감액은 절감액 합계에 포함하지 않음

② 「'09년 예산편성상」 절감실적 (시·도 본청분, 시·군·구 총계분, 시·군·구별 작성)

◎ 시·도 본청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예산 (최종예산)	당초 편성될 '09년 예산 (a)	최종 확정된 '09년 예산 (b)	절감액 (a-b)	비중
합 계(a+b)							100%
세출 절감	계(a=c+d+e+f)						%
	인력 운영비	소계(c)					%
	기본 경비	소계(d)					%
	사업비	소계(e)					%
		자연완료·감소					
		계속사업					
		신규·증액					
		국고보조사업					
	재무 활동	소계(f)					%
		자연완료·감소					
		계속사업					
		신규·증액					
		국고보조사업					
예 산 외		계(b)					%
		자연완료·감소					
		계속사업					
		신규·증액					
		국고보조사업					
민자유치		계					
		예산절감					

◎ 시·군·구 총계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예산 (최종예산)	당초 편성될 '09년 예산 (a)	최종 확정된 '09년 예산 (b)	절감액 (a-b)	비중
합 계(a+b)							100%
세출 절감	계(a=c+d+e+f)						%
	인력 운영비	소계(c)					%
	기본 경비	소계(d)					%
	사업비	소계(e)					%
		자연완료·감소					
		계속사업					
		신규·증액					
		국고보조사업					
	재무 활동	소계(f)					%
		자연완료·감소					
		계속사업					
		신규·증액					
		국고보조사업					
예 산 외		계(b)					%
		자연완료·감소					
		계속사업					
		신규·증액					
		국고보조사업					
민자유치		계					
		예산절감					

◎ 시·군·구별

(단위 : 백만원)

시·군·구명	'08년 예산 (최종예산)	당초 편성될 '09년 예산 (a)	최종 확정된 '09년 예산 (b)	절감액 (a-b)	비고
계					
○○시					
○○시					
○○군					
○○군					
○○구					
.....					
.....					

* 증감액과 절감액이 일치하는 것은 아님

③ 「'08년 순계예산 대비」 시·도 종합 절감계획·실적 (총괄 : 시·도 본청 + 시·군·구)

(단위 : 백만원)

	'08년 순계예산 (A)	절감계획 및 실적			절감비율 (B/A)	비고
		합 계 (B)	'08집행 절감계획	'09편성 절감실적		
계					%	
시·도본청						
시·군·구						

※ '08집행 절감계획 : '08년 4월에 수립한 절감계획이며, 절감실적이 아님

※ '09편성 절감계획 : 의회심의후 자치단체별로 확정한 절감실적

④ 「'09년 예산편성상」 절감 세부내역 (시·도본청, 시·군·구)

인력운영비 〈작성예시〉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별	'08년		'09년		절감액		절감 방법
	세부 사업명	예산액 (최종예산)	세부 사업명	예산액 (확정액)	편성목	금액	
시·도 본청명	인력운영비 (총괄)	×××××	인력운영비 (총괄)	×××××	101등	×××××	총액인건비 한도액 보다 ×××× 적게 편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203	△△	한도액보다 △△ 적게 편성
	0000	000	0000	000	303	000	포상인원 조정으로 예산절감
	.....		.....				.....
시·도본청	.....		.....				.....
시·군·구							

* 사업별 절감액이 시·도본청은 5억, 시·군·구는 1억이상인 경우만 작성
* 절감방법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명기하되,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08년 예산액과 '09년 예산액과의 차액과 절감액은 다를 수 있음

기본경비 〈작성예시〉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별	'08년		'09년		절감액		절감방법
	세부 사업명	예산액 (최종예산)	세부 사업명	예산액 (확정액)	편성목	금액	
시·도 본청명	기본경비	××××	기본경비	××××	201	×××	단가조정을 통한 절감
	0000	000	0000	000		000	
	.....		.....				.....
시·군·구명	.....		.....				.....

* 사업별 절감액이 시·도본청은 5억, 시·군·구는 1억이상인 경우만 작성
* 절감방법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명기하되,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08년 예산액과 '09년 예산액과의 차액과 절감액은 다를 수 있음

사 업 비 〈작성예시〉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별	'08년		'09년		절감액		절감방법
	세부 사업명	예산액 (최종예산)	세부 사업명	예산액 (확정액)	편성목	금액	
시·도 본청명	0000	000	0000	000	401	000	통합
	0000	000					
	××××	××	××××	×××	201	×××	축소
	□□□□	□□□			207	□□	폐지
	◎◎◎	◎◎◎	◎◎◎	◎◎◎	401	◎◎	단가조정
	.....		.....				.....
	신규		○○○○○	○○○	401	○○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설계비 미반영
	신규		×××××	××××	207	×××	내부심사 위원회 용역비 조정
	신규		△△△△△	△△△△	401	△△△	설치기준 조정으로 사업비 조정
	.....		.....				.....
시·군·구명	.....		.....				.....

* 사업별 절감액이 시·도본청은 5억, 시·군·구는 1억이상인 경우만 작성
* 절감방법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명기하되,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08년 예산액과 '09년 예산액과의 차액과 절감액은 다를 수 있음

한도액이 있는 경비의 절감내역 〈작성예시〉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별	경비내역	'09년 당초 한도액	'09년 예산액 (확정액)	절감액		비고
				편성목	금액	
시·도 본청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53	1,200	203	53	
	.....		.....			
시·군·구명	.....					.....

* 사업별 절감액이 시·도본청은 1억, 시·군·구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작성

재무활동 〈작성예시〉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별	'08년		'09년		절감액		절감 방법
	세부 사업명	예산액 (최종예산)	세부 사업명	예산액 (확정액)	편성목	금액	
시·도 본청명	×××××	××××	××××	××××	309	×××	사업 재검토를 통한 전출금 조정
	0000	000	0000	000	303	000	
	.....		.....				.....
시·군·구명	.....		.....				.....

* 사업별 절감액이 시·도본청은 5억, 시·군·구는 1억이상인 경우만 작성
* 절감방법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명기하되,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08년 예산액과 '09년 예산액과의 차액과 절감액은 다를 수 있음

⑤「'09 편성상 절감재원」재투자 사업 (시·도본청, 시·군·구)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별	세부사업명	사업비	재투자액	분야/부문
시·도 본청명	××××	0,000	000	
	△△△△	0,000	000	
	.....	.....		.....
시·군·구명	.....	.....		.....

* 계속사업중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 편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 재투자액이 시·도본청은 20억이상, 시·군·구는 10억이상인 경우에만 작성
* 사업비 :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자체사업비, 재투자 사업비 모두 포함
* 재투자액 : 절감재원을 가지고 재투자된 금액만 해당

⑥ 기능별「'09년 예산편성상 절감액 및 재투자액」분석
(총괄 : 시·도 본청 + 시·군·구)

분야	부문	'08년 최종예산 비중(A)	'09년 편성상 절감액(B)	'09년 당초예산 비중(C)	절감재원 재투자액 (B×(C/100))
총계		%		%	
010	일반공공행정	%		%	
	011 입법및선거관리	%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	
	014 재정·금융	%		%	
	016 일반행정	%		%	
020	공공질서및안전	%		%	
	023 경찰	%		%	
	025 재난방재·민방위	%		%	
050	교육	%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		%	
	052 고등교육	%		%	
	053 평생·직업교육	%		%	
060	문화및관광	%		%	
	061 문화예술	%		%	
	062 관광	%		%	
	063 체육	%		%	
	064 문화재	%		%	
	065 문화및관광일반	%		%	

분야	부문	'08년 최종예산 비중(A)	'09년 편성상 절감액(B)	'09년 당초예산 비중(C)	절감재원 재투자액 (B×(C/100))
070	환경보호	%		%	
	071 상하수도·수질	%		%	
	072 폐기물	%		%	
	073 대기	%		%	
	074 자연	%		%	
	075 해양	%		%	
	076 환경보호일반	%		%	
080	사회복지	%		%	
	081 기초생활보장	%		%	
	082 취약계층지원	%		%	
	084 보육·가족및여성	%		%	
	085 노인·청소년	%		%	
	086 노동원	%		%	
	087 보훈	%		%	
	088 주택	%		%	
	089 사회복지일반	%		%	
090	보건	%		%	
	091 보건의료	%		%	
	093 식품의약안전	%		%	
100	농림해양수산	%		%	
	101 농업·농촌	%		%	
	102 임업·산	%		%	
	103 해양수산·어촌	%		%	

분야	부 문	'08년	최종예산 비중(A)	'09년 편성상 절감액(B)	'09년	당초예산 비중(C)	절감재원 재투자액 (B×(C/100))
110	산업·중소기업		%			%	
	111 산업금융지원		%			%	
	112 산업기술지원		%			%	
	113 무역및투자유지		%			%	
	114 산업진흥·고도화		%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			%	
120	수송및교통		%			%	
	121 도로		%			%	
	123 도시철도		%			%	
	124 해운·항만		%			%	
	125 항공·공항		%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			%	
140	국토및지역개발		%			%	
	141 수자원		%			%	
	142 지역및도시		%			%	
	143 산업단지		%			%	
150	과학기술		%			%	
	151 기술개발		%			%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			%	
	153 과학기술일반		%			%	
160	예비비		%			%	
	161 예비비		%			%	
900	기타(행정운영경비)		%			%	

(3) (기획재정부) 국가예산 10% 절감 추진지침

- 담당기관 및 부서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 통보일자 : 2008. 3. 11
- 문 의 처 : (02) 2150~7111~7115

○ 본 지침은 각 부처가 3.2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예산 10% 절감 추진계획서 작성을 위한 지침입니다.

○ 국무위원 재원배분 토론회에서 부처별로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발표·토론할 계획임을 감안하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10% 절감은 절감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현재보다 일을 110%하자는 취지입니다.

○ 예산절감은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모든 부처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하므로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 10% 절감 추진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준과 양식 등 세부사항을 추가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통 사항

1. 추진 목적

-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조기에 구현
- 민간경영기법 도입, 원가의식 제고, 인센티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창의와 혁신을 촉발
- 공공부문 전반의 군살을 제거하여 추가적인 국민부담 없이 감세와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

2. 기본 방향

- '08년 및 '09년 예산을 대상으로 정부예산의 10%(20조원 수준)* 절감
  - 예산 편성·집행 등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절감을 추진하고 세입 확충 노력도 병행
- 기존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유지하면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프로세스 개선 등 집행 효율화를 통해 투입비용을 축소
- 예산절감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인 절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중점
- 모든 공무원이 자발적·창의적으로 예산절감에 적극 나서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

3. 절감 대상

- 대상기관 : 정부 예산편성 대상 전 중앙관서의 장
  - 공기업, 산하기관, 출연(연) 등 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절감 추진
- 대상사업 : 예산과 기금의 모든 사업

4. 절감 목표

- (목표액) 부처별 '07 ~ '11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09년 예산순계의 10%
  - '09년 예산절감액 뿐만 아니라 '08년 예산절감액, 세입증대액을 모두 합하여 목표액을 설정



〈예시〉 A부처 '09 예산순계가 10조원이면 절감 목표금액은 1조원

→ '08 절감액 0.2조, '09 절감액 0.7조, '09 세입증대 0.1조로 계획 수립 가능

5. 예산절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 예산절감을 달성한 개인·조직에 대해 새로운 인센티브 부여

①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

② 정부업무평가 중 예산절감 실적 등 재정부문 평가 항목 비중을 확대 추진

③ 예산성과금 확대,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시 주요 평가 항목에 예산절감을 신규 반영하는 등 개인 인센티브 강화

5. 협조 요청사항

- 예산절감은 편성과 집행 등 예산 全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든 부처의 자발적·창의적 협력이 필수적
  - 재정당국과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 ◦재정부 : 예산절감 가이드라인 제시, 범부처 제도개선사항 추진
    - ◦각부처 : 소관 사업에 대해 zero-base 재검토 및 절감계획 수립·추진
    - ◦총리실·행안부 : 정부업무평가, 근무성적평정·성과급 등에 있어 예산절감 인센티브 강화

-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시 부처별로 장관이 직접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성공사례를 전부처가 공유

- 상기 절감지침에 따라 '08년 예산절감계획 및 활용방안을 작성, 3.21일(금)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

6. 향후 추진 일정

- 3.11일 : 「예산 10% 절감 추진방향」 국무회의 보고 후 지침 통보
- 3.21일 : 부처별 예산절감 추진계획 제출
- 3.31일 : 「2008년 예산절감 종합방안」 확정·시행

※ 2009년 절감방안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

Ⅱ. '08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1. 기본 방향

- '08년 예산의 절감은 예산이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점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추진
  -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거나 경제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인건비, 경상비 등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선 절감
  - 사업비는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집행과정상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
- 절감된 재원은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감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2. 유형별 절감 지침

(1) 인건비

1 기본 방향

-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의 조기해소 및 작은 정부를 위한 인력의 긴축운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
- 인력운영에 관한 상세내용은 관련분야 별도 지침* 참고

* 중앙인사위원회「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08.2.22. 기배포)
행정자치부「'08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08.3월말 배포)

2 절감 기준

① 인력재배치를 통한 인건비 절감

- 지침 시행일 현재 결원중인 인력은 미충원이 원칙
- 퇴직 등으로 연도 중 발생한 결원은 신규채용을 보류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을 우선 배치

○ 구 중앙인사위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중 관련내용

-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별도 조치시까지 승진·신규채용 보류(p4)
- 명예퇴직, 자진퇴직, 전직 등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p7)
- 자체 채용시험 실시 및 이미 실시한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하는 등의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과 별도 협의(p15)

② 신규 증원 최소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 '08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된 인력(정기직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3월중 증원 시행여부 재검토* 예정

  → 재검토를 통해 증원이 보류된 규모만큼 인건비 절감

- 그동안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연도 중에 수시로 행해지던 증원(수시직제)도 최소화

③ 기타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절감

- 불필요한 야근 등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절감
- 연가 실시를 적극 권장, 예산상 편성된 연가보상일수(10일)외 추가 보상을 위한 이·전용 불허

3 절감재원 활용 :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소속 공무원 퇴직시 명퇴수당 등 소요에 우선 충당
- 초과현원 조기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로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 중 일부를 업무효율화 경비등으로 전환 사용토록 허용

※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절감방안' 과는 별도로 운영 예정

* 「'08년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은 '08.3월중 배포

(2) 경상경비

1 절감 대상

- 기본경비 전체
- 사업비 중 행사·홍보·혁신 등 공무원 직접사용 경비

- 사업비 중 경상적 비목(운영비(210목), 여비(220목), 업무추진비(240목))

2 절감 목표

① '08년 예산 대비 10% 절감, 다만 사업비 중 경상적 비목의 경우 법정경비 등 불가피한 소요*는 제외

* 기계약 임차료·시설장비 유지비 등 법정 계약체결에 따른 지출소요 확정경비 등

② 10% 절감과는 별도로,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상경비는 추가 절감

- 인건비가 감소한 부처는 감축비율만큼 기본경비*를 추가 절감

* 공무원 수에 연동되는 비목(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한정

- 임차청사에서 정부소유 청사로 이전시 임차료 전액 등

3 절감재원 활용

-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비용, 임차료, 정보시스템 통합 등에 우선 충당
-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및 안전관련 사업에 활용 가능



〈예시〉 화재 등 관련 안전설비 강화, 민원편의시설 확충 등

(3) 사업비

1 기본 방향

- 우선순위가 높고 새정부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전용이 가능한 예산 중심으로 절감대상 발굴
  -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절감요인을 적극 발굴

* 금번 조직개편으로 유사·중복이 발생되는 사업은 축소 조정

* 통합된 부처의 경우, 예산의 합동 집행, 시설·장비·전달체계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관련 경비 절감 등

-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집행과정상의 효율성을 제고
  -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거나 경제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단순한 물량축소나 사업시기 연기 등은 지양

❷ 예산 집행시 절감방법 (예시)

- 최저가 낙찰제 적용 확대, 신공법 도입 등 사업집행방식 개선
- 계약심사제를 통한 원가심사 강화
- 여건 변화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진 예산의 절감
- 행정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비용 축소
-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를 통한 복지지출 낭비요인 제거 등

※ 첨부「예산절감을 위한 점검사항 및 사례」,「예산낭비 사례집(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간)」 등을 참고

❸ 구체적 절감방안은 부처별로 자율적 수립

→ 기획재정부 협의·보완

- 절감이 가능한 사업명, 절감사유, 규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❹ 절감재원 활용

- 국정과제,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전용 가능
- 전용이 곤란한 재원은 불용 처리 → 감세재원 또는 금년도 국채발행 규모 축소에 활용

(4) 세외 수입

- 세외수입 증대도 예산절감 실적에 포함되므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 필요



〈예시〉 각종 과태료·부담금 징수율 제고, 제도개선 및 新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유휴장비 민간임대 등), 국유재산 관리개선 등

- '08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

Ⅲ. '09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1. 기본 방향

- 全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 항구적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중점
  - 특히,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폐합된 부처는 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유사·중복사업을 철저히 점검, 통폐합
  - 예산 편성단계 절감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시 절감, 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병행
-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추진 및 경제활성화 등에 활용

2. 유형별 절감 지침

(1) 인건비

- 기존 중기계획대로 요구(7% 증가), 구체적 절감액은 부처별 예산 절감방안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출

(2) 기본경비

- 기존 중기계획대로 요구(3% 증가), 구체적 절감액은 부처별 예산 절감방안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출

(3) 사업비

1 예산절감을 위해 사업타당성을 zero-base에서 철저히 점검

- 「예산낭비 사례집(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간)」에서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는 우선적으로 반영
- 구체적 절감방안은 부처별로 자율적 수립 → 기획재정부 협의·보완

② 예산 편성시 절감방법 (예시)

- 성과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낭비적인 사업의 축소·폐지
-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업의 축소·폐지
-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 제도개선,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을 통한 정부지원 소요 절감
- 실적공사비 등 집행실적을 반영, 예산단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 집중 투자를 통한 공기단축으로 실질 총사업비 절감 등

(4) 세외 수입

- 세외수입 증대도 예산절감 실적에 포함되므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 필요
- '09 중기계획 수입을 초과한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
  - 세입증대의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과거 추세치 이상의 목표액을 달성하는 경우에 한하며, 명확한 산출근거 필요

Ⅳ. 예산절감을 위한 10대 원칙

10대 기본원칙

① 제도개선 우선	⑥ 최소비용 원칙
② 정부역할 명확화	⑦ 유사·중복 금지
③ 민간의 효율성 활용	⑧ 우선순위 조정
④ 자원봉사 활성화	⑨ 성과평가 강화
⑤ 타당성 검증 강화	⑩ 정부의 솔선수범

1 제도개선 우선

-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동일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반드시 강구
- 제도개선과 재정지출이 병행되어야할 경우, 제도개선을 전제로 지원하고 추후 제도개선 성과를 점검,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
- 예산낭비 감시단 등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

2 정부역할 명확화

- 공공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급가능한 경우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 재정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
  - 민간과 경합되는 재정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중단하고 민간의 역할 확대를 위해 진입제한 등 규제를 철폐
-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민자사업 추진이나 공기업 자체자금을 활용한 투자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

3 민간의 효율성 활용

- 재정사업 중 아웃소싱 등 민간의 효율성을 통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이를 적극 활용



〈예시〉 학교·기숙사 BTL사업, 교도소 운영·주요시설 경비 아웃소싱 등

4 자원봉사 활성화

-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장려, 민간기부의 확대, 자원봉사인력 활용 등이 가능할 경우 이를 장려하고, 재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검토



〈예시〉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재해복구 자원봉사인력 참여확대 등

5 타당성 검증 강화

- 재원이 수반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추진시 타당성조사 실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을 지원
- 기 추진중인 사업도 여건이 변화하여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중단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여부 및 사업비 증액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

6 최소비용 원칙

- 사업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원가계산, 경제적인 공사방법, 철저한 계약심사, 적정한 물량·단가 산정 등 추진



〈예시〉 최저가낙찰제 확대, 턴키·대안 대상에 있어 가격경쟁 촉진, 실적공사비제도 확대, SOC사업 민간차입제도 도입 등

- 예산 외의 정책수단, 기존 시설·장비 활용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점검
- 경쟁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

7 유사·중복 금지

- 수혜자의 입장에서 부서·기관, 지자체, 민간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를 점검
  - 기관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시설연계·통합 등을 강구

⑧ 우선순위 조정

-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기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예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⑨ 성과평가 강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축소·중단하거나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를 제고
-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성과가 낮은 것으로 지적된 사업은 축소 또는 지원 중단을 검토
- 각 부처별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낭비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축소·중단하거나 추진방식을 개선

⑩ 정부의 솔선수범

-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정책연구비 등 행정경비 최소화
- 인력 재배치를 통해 증원소요를 충당함으로써 등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
-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된 부처는 예산의 합동 집행,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관련 경비 절감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 및 단체 예산의 구조조정 병행

별 첨 1 기금절감 추진지침

Ⅰ. 추진배경

- 예산 10% 절감(국정과제)에 병행하여 기금 절감을 추진함으로써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도모

  * 국정과제 : 제도개선,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예산 10% 절감

- 절감재원은 관련 분야의 국정과제,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활용 가능

  * '08년도 절감의 경우 계획변경 활용이 곤란한 재원은 불용 처리 후여유자금으로 운용

Ⅱ. 2008년도 기금절감 추진지침

1. 경상경비

1 절감대상

- 운영비(210), 여비(220), 업무추진비(240), 자산취득비(430-01)

  * 부담금 징수비용, 의무적 경비(예 : 선급법인세, 旣 계약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원가성경비(골프장·임대주택 관리비용 등), 용역 계약이 체결된 정보화경비는 절감 대상에서 제외

- 위탁용역비(210-15), 출연금(350) 및 민간경상보조(320-01) 目 등으로 지원되는 기금업무 위탁기관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절감 추진

2 절감목표

- 대상경비의 10% 절감
- 다만,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절감대상 경비 외에 타 비목(200목으로 한정)에서 예외적으로 대체절감 가능

2. 사업비

1 대 상 : 융자사업, 기타 경상사업 등 주요 지출사업

- 지출 효율화, 제도개선 등과 연계하여 절감방안을 수립
- 절감대상은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 사업선정·절감규모 책정시 「예산 10% 절감 추진지침」 준용
  - 융자지출은 단순 규모 조정이 아닌 제도개선, 집행효율화 등과 연계된 경우에만 절감실적으로 인정
  - 연금급여 등 의무적 지출 경비는 절감대상에서 제외

2 절감목표

- 대상 사업비의 10% 내외*에서 절감계획을 수립하되,기금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대상 사업의 '08년, '09년 절감액 및 자체수입 증액분을 합한 금액이 '07~'11년 중기계획상의 '09년 해당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

- 구체적인 기금별 절감목표 및 추진방안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수립 → 기획재정부와 협의·보완
  - 절감대상 사업명, 절감사유, 규모,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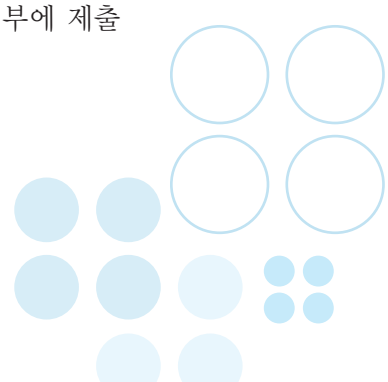

3. 자체수입

- 각 기금관리주체는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한 기금의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

  * (例示) 유휴장비 임대수입 증가, 국유재산 관리개선 등

- 기금절감 실적에는 제도개선 등에 의해 발생한 추가적인 수입 증대분만을 포함

  - 제도개선 등과 관계없이 추계조정 등을 통한 수입확대는기금절감 실적으로 불인정

Ⅲ. 2009년도 기금절감 추진지침

1 각 기금관리주체는「예산 10% 절감 추진지침」을 준용하여 경상경비·사업비·자체수입 별로 절감방안 마련

2 각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절감 계획을 반영하여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3 절감재원은 관련분야의 국정과제 추진, 재원전출을 통한 재정 운용 효율화 및 기금수지 개선 등을 위해 활용

Ⅳ. 행정사항

1 상기 지침에 따라 '08년, '09년 절감계획 및 활용방안을 작성, 3.21일(금)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

2 기금절감계획을 반영하여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

  * '10년 이후는 '09년 기금절감방안을 동일하게 적용

Ⅴ. 추진 일정

- 3월 21일 : 기금별 기금절감방안 제출(기금관리주체 → 기획재정부)
- 3~4월말 : 기금절감방안 협의·보완
- 5월 이후 : 각 기금관리주체별로 기금절감방안 실행

별 첨 사업 추진 단계별·유형별 점검사항

1.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사항

단 계	Check Point
1. 계획 단계	**1-1. 사업의 필요성 검토** – 누가 어떻게 요구한 사업인가?(또는 사업추진의 배경은?) – 사업의 필요성을 부서 혹은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논의하고 합의하여 결정하였는가? – 사업에 대한 국민(혹은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였는가? (또는 직접 수요조사를 하였는가?) **1-2. 사업의 목적 검토** – 사업의 목적이 명확한가? 예) 구체적인 성과지표의 제시 –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는가? 예) 법적 충돌이 없어야 함 – 파악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요인은 없는가? 예)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및 이해관계 조정 과정 **1-3. 사업 수행 주체의 타당성 검토** – 사업을 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 예) 공익성(민주성, 형평성 등)의 정도에 따라 판단 – 사업을 당해 부서 또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가? 예) 다른 부서 혹은 기관의 업무 배분에 충돌 여부 판단 – 사업을 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더라도, 소요 비용을 정부에서 조달해야 하는가? 예)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여부 검토 **1-4. 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 – 유사한 사업이 다른 부서 혹은 기관에서 수행되는지 검토하였는가? – 본 부서에서 관련 있는 사업 혹은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업이 다른 부서 혹은 본 부서에 있는 경우,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 사업의 수혜자 혹은 주민의 입장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는가? **1-5. 사업의 수행 방식 효율성 검토** – 총사업비 산정은 적정한가? 예) 사업 규모의 합리적인 검토 – 사업 수행 방식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예) 융자, 보조, 출자 등의 재정 수단의 적정성 검토 – 사업재원의 조달 방식과 재원의 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예) 금리 수준 등 지원 조건의 검토 – 사업수행 기간이 적정한가? 예) 기간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인력 배치는 적정한가? –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정보들은 충분한가? – 사업 수행에 있어서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공사 및 용역 계약 포함) 법적 근거와 참여 방식은 적정한가?
2. 집행 단계	**2-1. 지출의 합법성 검토** – 지출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예산항목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2-2.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이 수행되는가를 검토** – 경쟁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였는가? – 사업비 증가 원인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는가? **2-3 적절한 시기의 검토** –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있는가? – 적기 시행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예) 실업자 방지의 경우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지? **2-4. 사업자의 선정** – 민간이 사업 집행의 일부를 담당하는 경우에 공사 및 용역 계약 포함,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파악하였는가? – 사업 수행자의 능력과 경쟁성 등을 파악하였는가? 예) 전문성, 과거 유사한 사업의 경험, 담당 인력의 적정성 등 – 사업 수행자가 사업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는 아닌지 파악하였는가? **2-5. 사업의 수혜자 선정** – 사업의 수혜자가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가? 예) 65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 나이를 충족하고 있는가? 예) 재산 얼마 이하를 요구하는 경우 : 재산은 얼마인가? – 부적절한 자료와 문서를 제출하여 수혜를 받는지 검토하였는가? **2-6.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판단** – 사업이 예정된 시기를 맞추면서 집행되고 있는가? 예) 사업이 끝날 때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의 공기와 기간을 관리 – 사업이 예상된 비용을 맞추면서 집행되고 있는가? – 사업이 예정된 인력 투입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가? **2-7. 사업 집행 과정 중에서 변화된 요인 검토** – 사업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소요 비용의 증가가 생기지 않는가? – 중대한 변화가 사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변화와 소요 비용의 변화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 중대한 변화가 사업 수행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인가? **2-8. 사업에 대한 평가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 – 부서 및 기관 내에 사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는가? – 이후의 다른 동일 혹은 유사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체계가 있는가? –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환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에 활용하고 있는가?

2. 사업 유형별 점검사항

1 사업 유형 구분

유형 구분	개념 및 종류
① SOC 사업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 토목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물류터미널, 주택, 농업개발시설, 하수처리장 등 * 건축 : 청사·연구소, 교정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② 시설·장비 구매사업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전산장비, Software 등을 구입하는 사업 * 정보시스템 구축·개선을 위한 HW·SW 구입 포함
③ R&D 사업	특정과제에 대하여 전문가·전문기관 등을 통해조사·연구 및 개발토록 하는 사업 * 국책연구개발, 연구기관 지원, 연구개발기반 조성 등
④ 출연·출자사업	민간이 정부를 대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이전지출하는 사업 * 출연기관 출연, 민간 출연, 민간기금 출연, 정부투자기관·예금은행 출자 등
⑤ 융자사업	정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 및 자치단체에 유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 * 주택, 중소기업, 농어촌지원, 문화·관광, 에너지, 환경, 노동 분야 등 특별회계·기금사업의 대부사업
⑥ 민간보조사업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 정부대행 및 위탁사업수행 단체 보조,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보조, 민간개인 보조,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⑦ 지자체보조사업	지자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 등
⑧ 기타 사업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사·행사 사업 등 * 국립의료원 등 서비스제공사업, 통계조사 등 조사사업, 정부행사, 교육훈련, 정책홍보 등

1. SOC 사업

	세부 Check Point
계획 단계	◦ 사업의 상위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되어 시급성이 인정되었는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 국도5개년계획 등 ◦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 특정 지역에 대한 선심성·과시성 사업은 아닌가? –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과잉 건립 지양 ◦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중도에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없는가?
집행 단계	◦ 설계경제성 검토(VE) 등을 통해 생애주기비용(LCC) 차원에서 타당한 설계가 이뤄졌는가? ◦ 장래 예측 수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잉 규모로 설계·시공하고 있지는 않는가? – 청사·체육시설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 준수 필요 ◦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으로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이 되어 예산 집행이 곤란한 경우는 아닌가? ◦ 당초 계획한 성과물을 산출하고도 예산이 남았으나, 불요불급한 물량으로 변경 집행하지는 않는가? – 시설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 금지 ◦ 연례적·반복적인 집행부진, 갈등 등으로 추진이 불필요 하지 않는가? ◦ 계약방법 개선, 실적가 반영, 신공법 적용, 기술 혁신 등으로 원가 절감의 여지는 없는가? – 최저가 낙찰제 적용, 원가심사 강화 등

2. 시설·장비 구매사업

	세부 Check Point
계획 단계	◦ 필요성이 떨어지는 시설·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아닌가? ◦ 기존 장비 활용이나 개보수를 통해 사용할 수 없는가? ◦ 신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리스·임차 등이 가능하지 않는가? ◦ 시설·장비에 대한 연차별 수급계획 등 중장기 확보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매량을 정하였는가? ◦ 기존 시설·장비와 연계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였는가?
집행 단계	◦ 내용연수, 신제품 출시주기 등을 감안할 때 구입 시기를 조절할 수 없는가? ◦ 적법하고 효율적인 구매방법은 무엇인가? – 수의계약, 경쟁계약, 개산계약 등 다양한 방법 검토 ◦ 가격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제출한 가격에 근거하여 고가로 구매하지는 않는가? – 가격 정보지, 조달청 조달단가 등 객관적 자료와 비교 ◦ 신기술 개발, 단가 인하 등에 따라 사업물량·규모 및 예산을 축소·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 불필요한 기능·항목이 포함된 시설·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아닌가? – 필요이상의 고사양의 시설·장비 구매 지양 ◦ 구매한 시설·장비가 당초 계약한 내용과 일치하는가? ◦ 직접 구매와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매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 필요이상으로 큰 시설이나 많은 양을 구매하는 것은 아닌가?

3. R&D 사업

	세부 Check Point
계획 단계	◦ 연구개발의 목적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사전기획이 부실한 사업 및 과제는 지양 ◦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 조성 사업 ◦ 다른 정부기관, 민간기관 등도 유사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중복되지는 않는가? ◦ 연구개발 성과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인건비, 직접비 등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의 산정은 적정한가?
집행 단계	◦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과의 협약은 적절하게 체결 되었는가? ◦ 전문성, 과거 연구개발성과 등을 감안하여 연구자 및 연구 과제를 적절히 선정하였는가? ◦ 연구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가? ◦ 중간평가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재조정할 필요성은 없는가? – 단계별, 연차별 평가를 통하여 미흡한 과제의 경우 예산 지원 축소 또는 중단 ◦ 연구개발 결과가 구체적으로 도출되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4. 출연·출자 사업

	세부 Check Point
계획 단계	◦ 출연·출자의 필요성은 있는가? ◦ 출연·출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2조) ◦ 출연·출자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기관이 선정되었는가? ◦ 출연·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적정한 출자·출연금을 산정하였는가?
집행 단계	◦ 출연·출자 신청 서류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한 후 출연·출자하였는가? ◦ 출연·출자기관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가? ◦ 사업추진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하는 등 사업수행 기관의 지출구조를 조정할 수는 없는가? ◦ 수수료·요금 현실화, 수입 감면 축소 등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는 없는가? ◦ 출연·출자금이 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실제 집행 실적 부진 여부,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의 적정한 처리 여부 등을 점검 ◦ 출연·출자금을 받는 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 이사회 등을 통하여 기관운영 및 출연·출자금 집행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

5. 융자 사업

	세부 Check Point
계획 단계	◦ 융자사업의 목적이 특별회계·기금 등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가? ◦ 금융여건 변화 등에 따라 민간금융부문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 신보·기보 등 보증지원을 통한 민간금융기관 대출 가능여부 우선 검토 ◦ 융자금리·융자기간 등 융자조건은 사업대상의 수요에 맞게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 융자사업간 또는 융자·보조사업간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없는가? ◦ 재정융자사업의 수요 부진 등에 따라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아닌지?
집행 단계	◦ 융자금이 지원대상자에게 융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 융자금을 당초 신청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후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부적격한 수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대출심사 기준 마련 등 ◦ 사업계획, 자금조달능력 및 공사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건물 신축·개보수 등 시설 융자금의 경우 기성실적에 따라 융자 지원 ◦ 자산규모 등 재무상태가 양호한 융자대행기관 선정 및 융자취급 수수료는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가? ◦ 융자원리금 연체, 미회수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처·융자대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 융자원리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6. 민간보조사업

	세부 Check Point
계획 단계	◦ 법령 등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는가? –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FTA대책 등 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 개인에 대한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 ◦ 중앙정부·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 국고보조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는가? ◦ 국가 주요정책과 연관성 등 지원 필요성은 있는가? – 정당, 종교단체, 노동조합, 압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지양 ◦ 유사·동일 목적으로 여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중첩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 ◦ 보조금 신청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하였는가?
집행 단계	◦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였는가? –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 3년이상 지속될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지속 지원여부 결정 ◦ 단체 선정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과정을 거쳤는가? ◦ 보조금 교부결정시 자기자금 부담능력유무,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위탁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가? – 외부·자체 감사 결과, 과거 실집행 실적 등을 종합 고려 ◦ 지원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담보제공 행위를 하는 등 보조사업자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통제수단은 실질적으로 구축·활용되고 있는가? ◦ 집행잔액·이자에 대해 정확하게 정산이 이루어졌는가?

7. 지자체보조사업

	세부 Check Point
계획 단계	◦ 외부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였는가? –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기 수립된 지역개발계획과의 부합성 등 ◦ 중앙정부나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는가? ◦ 법령, 관계부처간 합의된 중장기 계획 등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는가? – 보조금법시행령의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불가 ◦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사업추진 세부 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는가? ◦ 지자체의 지방비 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타부처에서 수행중인 지자체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였는가? ◦ 해당 지자체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였는가?
집행 단계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통과, 부지확보 등 지자체의 사업집행준비가 완료되었는가? ◦ 지자체 국고보조금 신청내용에 대해 타당성 또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였는가? ◦ 당해 지자체가 사후정산, 실적보고 등 보조금법상의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는가? –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법의 '사후정산' 미적용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당시의 취지대로 사업규모, 재원조달계획, 사업내용 등을 잘 따르고 있는가? ◦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처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 지자체의 실집행률과 연계하여 해당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가? ◦ 장기간 사업비 이월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도 매년 예산을 교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4) (행정안전부)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 제고 추진계획

- 담당기관 및 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운영과
- 수립일자 : 2008. 7
- 문 의 처 : (02) 2100-4562, 4575

[공공청사 에너지효율 제고 추진계획]

대통령께서 공공청사의 신·증·개축시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단계별·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임

※ '08. 6. 3, 창의·실용 유공공무원 포상시 지시

Ⅰ. 추진배경 및 근거

① 추진배경

- 유가 140여 달러의 超 고유가시대에 적극 대응

  ⇒ 정부가 앞장서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 국가적 어려움 극복

- 지금까지는 기존 청사 유지·관리차원의 에너지 절약에 치중

  ⇒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및 신·증·개축시부터 에너지절약형 설계기준을 적용, 근원적 에너지 절감 추진

② 관련규정

- 공공청사의 경우 일반건물과 같이 에너지 효율화관련 총 8개의 관련법령·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에너지 기본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등 4개 법령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등 4개 지침

③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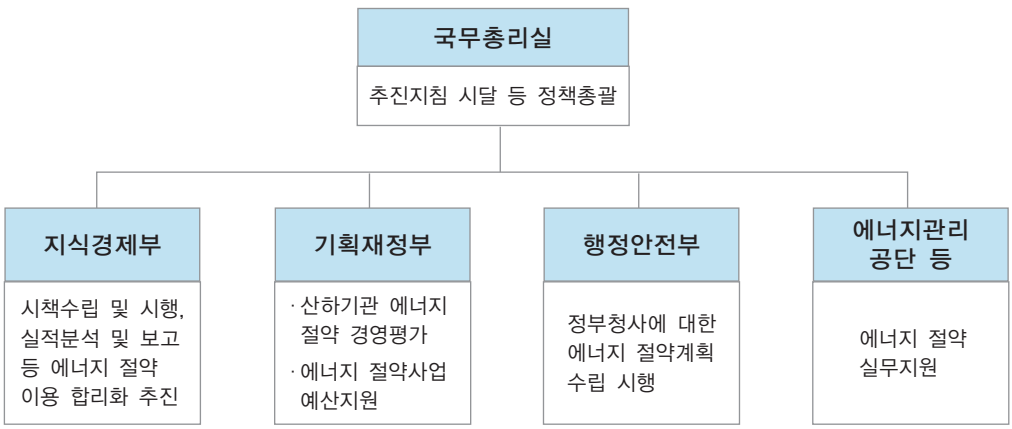

Ⅱ.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기본방향

○ 앞으로 공공청사 신·증·개축은 외형과 미관보다는 에너지 효율 및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하는 등 실용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 에너지 효율화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최대한 적용

– 또한, 지침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발굴·추진

① 일반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등 친환경 에너지 설계기준 적용

※ 서울시의 경우 실정에 맞는 예규 등을 제정·운영(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

- 각급 기관장은 건축물 신·증·개축시 에너지 효율화에 수반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화에 솔선수범

② 에너지 효율화 권장방안 (세부내용 : 별첨 1)

〈1단계〉: 비예산 항목을 우선 적용

분 야	항 목 별	
층고의 적정화	층고 및 적정고는 가능한 낮게 설치	
유지관리	– 칸막이 설치 지양 – 창문개폐 철저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용 – 승강기 효율적 운행	– 색상과 형태를 고려한 커튼설치 – 적정온도 유지 – 효율적인 전등관리

〈2단계〉: 예산확보를 통해 절감 효과가 큰 분야부터 적용

분 야	항 목 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적용	– 친환경 기준 권고
건축분야	–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 건물지붕 단열성능 기준 강화 – 차양 설치 등 – 방풍실 등 설치 – 에너지 소비성 자재사용 지양	– 건물외벽 단열성능 기준강화 – 창호 기밀성 등급 상향 조정 – 자연채광 및 자연 통풍 – 옥상조경 적극 도입
기계설비	– 가스보일러 등급 향상 – 열원 및 반송설비 효율 향상 – 외기도입 및 최적기동제어 고려 – TAB 실시 (Testing Adjusting Balancing, 시스템의 시험·조정·평가)	– 냉방설비 등급 향상 – 외기 냉방시스템 적용 – 빗물 및 중수이용시설 적극검토
전기설비	– 고효율 전동기 확대 – 고효율 조명기기 확대 – 조명 및 전력제어	– 실내조명 자동제어 향상 – 조명계획 및 관리

Ⅲ. 기대효과

- 층고 및 천장고를 낮출 경우 열손실을 방지하고 냉·난방 부하 감소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가 가능

- 건축물 단열 강화, 옥상 조경, 차양 등 냉·난방 부하를 낮추는 친환경 에너지 절전형 건축설계를 통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 에너지 절약형 기계·전기설비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최적의 냉난방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에너지절감 도모

- 실내 적정온도 유지, 승강기 등 절약 운전을 통하여 유지관리 비용 절감

Ⅳ. 향후 조치계획

- 익년도 부처 청사수급요청 관련 간담회시 교육 실시 ('08년 11월)
  - 청사 신·증·개축시 에너지 효율화 권장기준 소개
  - 관련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청사 설계 권고

- 각 기관별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실적 확인 ('08년 12월)
  - 정부청사 예산확정 내역 제출시, 각 기관별 추진 사업(완료사업 포함) 중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한 에너지 절약 실적 제출
  - 에너지 절약형 청사 실적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청사 수급조정시 인센티브 부여

- '10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통보 시에 청사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세부 심의 기준 통보 ('09년 1월 중순)

별첨 1 에너지 효율화 권장방안 세부내용

〈1단계〉: 비예산 항목을 우선 적용

분 야	항목별	권 장 사 항
층고의 적정화	● 층 고 ● 천장고	▶ 현재 국토해양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서 기준고시 – 거실의 층고 및 천장고의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설치 ▶ 권장사항 – 청사의 층고는 필요 환기량, 보, 슬라브의 크기와 설비 등을 고려하여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비의 절감도 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게 설치 – 청사의 천장고는 냉·난방 및 전등의 밝기 등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실의 용도와 환기량 및 쾌적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설치
유지관리	● 칸막이 설치 지양	▶ 사무실의 냉·난방 효율 및 쾌적성과 전등 밝기의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를 지양
	● 커튼	▶ 창문커튼으로 인하여 실내가 어두워 전등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도록 색상과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창문 개폐 철저	▶ 냉·난방 공급기간 중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문개폐를 철저히하여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
	● 적정온도 유지	▶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20℃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6℃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 단, 미술품 전시실 등 특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공간은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한 온도를 유지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활용	▶ 에너지 절약·손실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 효율적인 전등관리	▶ 창가측 조명은 채광의 밝기에 따라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분리 운영 ▶ 일과시간 이후 소수인원 근무시 사무실 전체 전등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별 조명스탠드를 사용 ▶ 일과시간 후에 조명자동제어시스템을 이용 전등을 제어하여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에너지 절약
	● 승강기 효율적 운행	▶ 승강기내 승객이 없을 경우 승강기내 조명의 자동소등이나 환기휀의 동작을 자동으로 중지 ▶ 출퇴근, 중식시간 등 혼잡 이외 시간에는 엘리베이터를 중지시켜서 운전대수 자동제어 ▶ 엘리베이터를 가동하지 않는 심야시간에는 전원을 차단하여 무부하 손실 방지 ▶ 3층 이하 운행금지, 격 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 단, 환자·장애자·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2단계〉: 예산확보를 통해 절감 효과가 큰 분야부터 적용

분 야	항목별	권 장 사 항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 건축물 구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에 적합하여야 함 ▶ 공공기관에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함 (2008. 6. 12, 국무총리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개정) ▶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 관련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 하여야 함
	● 친환경 기준 권고	▶ 친환경적인 건축물 구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에 의한 우수(65점 이상) 등급 이상이 되도록 권고 ※ 서울시 친환경 기준 75점 이상(서울시 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설계 기준)
건축분야	●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인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총건축공사비의 5% 이상 투자 의무화 및 건축 연면적 3,000㎡이하도 권장
	● 외벽 단열 강화	▶ 창건물외벽 단열성능 기준 강화(공공청사 기준) – 중부 : 1.75(W/㎡·K)이상 → 1.34미만(↑23.4%) – 남부 : 1.95(W/㎡·K)이상 → 1.50미만(↑23.1%) – 제주 : 2.46(W/㎡·K)이상 → 1.88미만(↑23.6%) ※ 수치가 낮을 수록 단열 성능이 우수함 – 중부인 경우 : 우수 1.34미만 〉보통 1.34~1.75미만 ※ 서울시 공동주택 기준은 1.26(W/㎡·K)이상 → 0.96미만(↑23.8%)임
	● 지붕 단열 강화	▶ 건물지붕 단열성능 기준 강화 – 중부 : 0.29(W/㎡·K)이상 → 0.22미만(↑24.1%) – 남부 : 0.35(W/㎡·K)이상 → 0.27미만(↑22.8%) – 제주 : 0.41(W/㎡·K)이상 → 0.31미만(↑24.4%) ※ 수치가 낮을 수록 단열 성능이 우수함 – 중부인 경우 : 우수 0.22미만 〉보통 0.22~0.29미만
	● 창호 및 유리	▶ 공창호 기밀성 등급 상향 조정 – 통기량(㎥/h㎡, KS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 4이상~6미만 → 2이상~4미만(↑평균40%)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활용	▶ 에너지 절약·손실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 차양 설치 등	▶ 유리는 열전달을 감소시켜 냉·난방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복층유리, 로이유리, 이중창, 고기밀성 단열 창호 등을 사용 ▶ 건물의 동·서측에는 수직차양, 남측에는 수평차양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동절기 야간에 창을 통한 열손실 감소를 위한 불투명 단열덧문, 단열커튼, 단열셔터 등 설치
	● 자연채광 및 자연 통풍	▶ 자연채광과 자연통풍이 가능한 사무실 폭 등의 효율적인 평면설계와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의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고려 ▶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 채택

	● 방풍실 등 설치	▶ 현관 출입문은 회전문이나 방풍실 및 Air Curtain 설치
	● 옥상조경 적극 도입	▶ 하절기와 동절기의 열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옥상조경 적극 도입
	● 건축자재	▶ 건축자재는 에너지 소비성 자재의 사용을 지양하여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고 환경파괴가 적은 재료 사용
기계설비	● 가스보일러 등급 향상	▶ 가스보일러(중앙난방방식) 등급 상향 조정 – 가스보일러 열효율 : 81~83%미만 → 83%이상
	● 냉방설비 등급 향상	▶ 축냉식 전기냉방 또는 가스이용 중앙집중 냉방설비 등급 상향 조정 – 주간 최대냉방부하 담당 비율(%) : 60%이상 → 70%이상
	● 열원 및 반송설비 효율 향상	▶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 ▶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며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 풍량제어 등의 방식을 채택 ▶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에 대한 회수 및 재이용 방안을 검토
	● 공기 조화설비	▶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환기 및 제어설비	▶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한 최적기동 제어가 가능토록 고려
	● 위생설비	▶ 빗물 및 중수이용시설을 통해 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검토
	● TAB 실시	▶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시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를 통해 건축물의 설비적 환경시스템을 검토·조정토록 하여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보완토록 고려 ※ TAB : 시스템의 시험 , 조정, 평가
전기설비	● 고효율 전동기 확대	▶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건축물로서 고효율 유도 전동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동력 시설 용량에 대한 적용 비율 60% → 70%이상 (↑16.67%)
	● 실내조명 자동제어 향상	▶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건축물로서 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전체 조명부하의 40% 이상→50% 이상(↑25%)
	● 고효율 조명기기 확대	▶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건축물로서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을 75%→80% 이상(↑6.7%)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조명기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LED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
	● 조명계획 및 관리	▶ 조명회로 구성은 부분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세분화하여 구성 ▶ 창가측 조명은 주광센서를 설치하여 채광의 밝기에 따라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 전력소모량이 많은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
	● 조명 및 전력제어	▶ 화장실 전등은 센서를 부착하여 사용할 때만 점등 되도록 구성 ▶ 수변전설비, 조명설비의 종합제어감시 및 운영관리가 가능한 자동제어설비 채택 ▶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등을 통하여 전력피크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구성 ▶ 층별, 부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절전 유도

별첨 1 에너지 절약관련 법령 및 지침

관련 규정	제명	제정일 (개정일)	주요내용	소관 부서
법령 (4)	● 에너지 기본법	'08. 2.29	▶ 에너지에 대한 기본원칙, 국가적인 책무 등 규정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단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운영	지식 경제부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08. 2.29	▶ 정부 에너지사용 수요자와 공급자의 책무 ▶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 기술개발·온실가스저감·수급안정, 고효율기자재 인증 등 이용합리화	지식 경제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08. 3.14	▶ 지열·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의 신·증·개축시 총건축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 사용	지식 경제부
	● 건축법	'08. 6. 5	▶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기준,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 이용 기준 ▶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설계 등의 가이드라인)	국토 해양부
지침 (4)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제2008-3호 ('08. 6. 12)	▶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절약 목표 ▶ 건물·수송·교육·홍보 등 부문별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실적 보고 및 점검 등	국무 총리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008-5호 ('08. 1.11)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에너지절약 계획서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	국토 해양부
	●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제2008-178호 ('08. 5월)	▶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국토 해양부·환경부
	● 건축물의 냉방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제2008-17호 ('08.4.16)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	지식 경제부

(5) (지식경제부) 초고유가 에너지절약대책 세부 시행방안

- 담당기관 및 부서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 수립일자 : 2008. 7. 10
- 문 의 처 : (02

[초고유가 에너지절약대책 세부 시행방안]

– 초고유가 대응 국무총리 특별지시 관련 –

① 수립목적

- 「정부의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대책('08.7.6)」 및 국무총리 특별지시(2008-5호, '08.7.7)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마련

② 분야별 세부시행방안

가.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홀짝제로 전환

- 적용일시
  – '08. 7.15부터 별도지시가 있을 때 까지

- 적용대상기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제1항(舊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 적용대상 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 일반인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에 따라 공공기관 출입 통제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용주차장(환승주차장 등)은 승용차요일제를 적용하고, 랜트카 및 리스카는 홀짝제 및 승용차요일제 적용대상

● 적용방법

- 홀수날은 홀수번호 차량, 짝수날은 짝수번호 차량 운행
- 31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홀짝제 전면해제

● 기관의 시행의무

- 해당공공기관은 홀짝제 운행을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기관 실정에 맞는 페널티 부과방안 마련

● 제외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2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차량 및 7인승 이상 관용승용차량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8-3호 (2008.6.12)〕

제29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 단, 경차·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긴급 자동차·보도용 자동차·외교용 자동차·군용 자동차·경호용 자동차·화물 자동차·특수 자동차·승합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나.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50%이상 우선구매 및 2012년까지 완료

- 승용차의 내구년한이 도래한 경우 점진적으로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로 교체
  - 기관보유 승용차가 2대 이하인 경우 자율적으로 선정 가능

다. 업무용차량의 운행을 30%까지 줄일 것

- 기관실정에 맞게 운행감축방안 마련 시행
  * 2부제 시행으로 50% 감축운행되나 7인승 이상 승용차량 등 예외사항을 감안하면 30%이상 감축효과 예상

라. 공공건물의 실내온도를 여름철 27℃, 겨울철 19℃

- 여름철 27℃는 최저유지기준, 겨울철 19℃는 최고유지 기준이므로 동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마. 엘리베이터 4층이하 운행금지, 5층이상 격층운행

-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지시대로 운영
  - 다만, 공공기관이 일반인과 같이 사용하는 건물 등은 기관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 가능
    * 환자, 장애자, 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용 가능

바.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에 대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제한

-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에 대한 경관조명 사용제한(금지) 적용시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시까지이며,
  - 유형문화재 및 사적지 등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제외 가능
  -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경관조명이라도 지나칠 정도의 과다조명일 경우 기초지자체에서 사용자제 권고

사.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조명구간의 가로등 부분소등

- 적용시간 : 23:00부터 자동차 운행이 적은 익일 일출시까지
- 적용대상 : 노폭 12미터 이상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의 가로등
- 적용방법 : 설치된 전체 가로등에 대한 격등제 실시
- 적용제외 : 횡단보도 주변, 안전 및 방범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아. 야간 근무자가 국소조명(스텐드)을 활용할 수 있게 조치

- 야간의 경우 근무인원의 1/3이하만 근무할 경우 사무실 조명은 소등하고 국소 조명 권장
- 각 기관별 운영지원과(회계·경리)에서는 각사무실별 국소 조명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수량 공급.

③ 기타 및 행정사항

가. 통근버스·셔틀버스 확충 및 업무용 택시제 운행확대

- 시내 공무 출장시 공용차량 대신 영업용 택시 활용
  - 조기 출근 및 심야 퇴근 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각기관별 운영지원과에서 세부시행방안 마련 시행
  - 기본원칙은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사용”에 한함

- 운영지원과(총무부서)는 통근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행정안전부는 통근버스 및 셔틀버스 운용계획에 반영

나. 각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홍보강화

- 각부처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절감을 실천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

- 소속직원들의 이해와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초고유가 에너지절약 대책 보완]

I. 검토배경

-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2008-5호, '08.7.7)」 시달
  -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08.7.9)으로, 지경부는 공통적용 사항을 중심으로 全공공기관을 대상('08.7.10)으로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통보

- 일선기관에서 총리특별지시 중 승용차 홀짝제에 대해 기관특성 및 현실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보완대책 마련

II. 보완내용

①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활용한 기관특성 반영

- 승용차 홀짝제 운행이 곤란한 기관 및 소속임직원에 대해 소속기관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직상급기관*에 문서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홀짝제 적용제외 가능(소속기관은 홀짝제 제외 비표발급)

  * 직상급기관이라 함은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기관의 주관부처 (팀·과단위)를 말하며, 중앙부처·청·광역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운영

  - 이 경우 직상급기관은 제외사유 등에 대한 적정성 및 공정성 판단을 위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심의사항(예시)

범죄수사용, 주정차 단속, 안전·시설 검사용 등으로 활용되는 직원보유차량,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학교 출퇴근용 차량 등

② 유아동승차량에 대한 비표발급기준 명확화

- 유아동승차량으로서 비표발급 대상은 맞벌이부부 또는 직장여성에 한하며, 사실확인은 의료보험 및 재직증명서에 의함
  - 신청인의 주거지 주소와 영아원, 유아원, 유치원 및 위탁지(친인척 등)와 근거리인 경우(주소가 같은 동(洞)단위 등) 발급 불가
  - 전 공공기관은 그동안 발급된 모든 비표에 대해 보완대책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토록 하며, 향후에도 제도 도입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 후 비표를 발급

③ 카풀 차량에 대한 홀짝제 면제

- 카풀참여차량 신청은 소속공공기관에 등록된 승용차를 보유한 3인이상이 참여할 경우 인정하며,
  - 소속 공공기관은 순차적 운행에 대비 참여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카풀차량임을 증명하는 비표 발급
    * 비표발급신청서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카풀참여차량 증명서는 별첨 양식을 참고하여 기관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카풀참여차량 비표를 부착하였다 하더라도 3인미만 탑승시는 공공기관 출입 불가
  - 카풀참여차량 증명은 소속기관 출입시만 유효하며, 타기관 방문시 비표 비치 및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홀짝제 적용

〔참고 : 카풀제 참여차량 비표양식 예시〕

발급번호 :

승용차 홀짝제 제외차량

(승용차 카풀제 참여차량)

○ 차량번호 : (대상자 :)

2008. 7. 18.

○○○기관장 (인)

(6)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대상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공용차량 및 정부청사 관리·운영)

- 담당기관 및 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운영과
- 수립일자 : 2008. 7
- 문 의 처 : (02) 2100-4562, 4575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08.7.6 발표된 정부의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과 관련한 공용차량 및 정부청사 관리·운영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임

Ⅰ. 추진 개요

① 추진 근거

-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2008-5호, '08.7.7)」

② 추진 방향

- 초고유가 시대에 범국가적 에너지 절감 분위기 조성에 정부부터 솔선수범
- 수송·건물·조명에 소요되는 에너지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Ⅱ. 분야별 추진방안

1. 중앙행정기관 대상 차량운행 억제

□ 차량 2부제 실시

◎ 대상 : 장·차관급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

제외 차량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08.6.12)」 제29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차량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은 별도 비표 등 조치

○ 7인승 이상 승용차량

◎ 방 법

– 차량 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

* 31일, 토요일, 공휴일(일요일,국경일 등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날)은 2부제 운행에서 제외

* 일반인 차량은 요일제에 따라 정부청사 출입 통제

◎ 시행시기

– '08. 7. 15 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까지

□ 공용차량 30% 운행 감축

◎ 기관 실정에 맞게 운행 감축 방안 마련·시행

2. 공용차량 운행 억제에 따른 보완

□ 공무원 통근버스 이용 확대 (7.14부터 시행)

- 과천청사 : 통근버스와 셔틀버스 신설 및 확대
  - 통근버스 증차 : 11대 * 3대 기 증설(5. 26)
  - 통근버스 교체 : 25인승 버스(6대) → 45인승으로 교체
  - 퇴근 셔틀버스 운행 : 3대(강남, 분당, 영등포간 1일 2회)
- 대전청사 : 통근버스 8대 신설
- 정부청사 간 업무연락 지원
  -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간 업무연락 버스 운행 : 1일 3회

    * 현재 중앙-과천-대전청사 간 1일 1회 운행 중

□ 업무택시제 운영 확대

- 방 법
  - 시내 공무 출장시 공용차량 대신 영업용 택시 활용
  -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조기 출근 및 심야 퇴근시에도 활용 각 부처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일상적 출퇴근은 이용대상이 아님)
- 시 행
  - '08. 7. 15. 이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3. 공용차량의 유류비용 절감

□ 일반업무용 차량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확대 *'08.5.30 각부처로 기시행

-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 교체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로 우선 전환
- 2012년까지 50%수준이상으로 경차비율 확대(현행 19.8%)

□ LPG차량 확대

- 신규구입시 LPG경차 및 LPG하이브리드차 권장
  * '09년부터 생산 예정
- 운행 중인 공용차량도 LPG차량으로 구조 변경 권장
  * 운행기간 4년이상, 연간 6,000km 주행수준에서 LPG로 개조시 연 35만원 정도 유류비 절감 (아반떼 기준)
- 경제속도 준수, 주유시 가급적 70% 이하로 주유
  * 국민제안 채택, 연비향상

4. 사무실 냉·난방온도 조정 운영

- 현재 적정 실내온도를 여름철 평균 26℃이상에서 1℃ 조정된 27℃ 이상 유지 (겨울철 20℃ 이하 → 19℃이하로 조정)

5. 전등, 승강기 등 운영 감축

- 사무실, 복도 등 공용공간 전등 추가 소등(제거)
  - 기준조도 : 300~500 룩스 → 최소기준 300 룩스 권장
  - 중식시간 및 퇴근이후 사무실 일괄소등 지속 실시
- 경관조명 및 가로등 절전
  - 경관조명 금지, 가로등은 50%~70% 소등
- 전자홍보 게시판 운영시간 단축 : 10시간(현재) → 5시간
-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 4층이하 금지, 5층이상 격층 운행

※ 야간근무시 탁상스탠드 사용 권장(부처별 구입, 실·국·과별 야근자 활용)

Ⅲ. 행정 사항

- 각 부처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절감 실천
  - 구체적 절감방안이 7월 15일 이전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

- 각 기관 홈페이지·인트라넷 등에 게시, 부서별 교육·홍보 등을 통해 직원들이 숙지하여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

(7) (행정안전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개선 계획

- 담당기관 및 부서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수립일자 : 2008. 6
- 문 의 처 : (02) 2100-3906~3907

Ⅰ. 추진배경

- 최근 석유시장의 수급 불안정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사상 초유의 고유가 지속
  - ※ '08. 6. 6일 기준 국제원유가(배럴당)
  - ☞ WTI : 138.54달러, 브렌트유 : 137.69달러, 두바이유 : 122.76달러

- 사회양극화 해소, 예산절감 등에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장 등의 전용차량 관리·운영 개선과 공용 차량의 경차 확대 필요

- '04년부터 관용차량 구입시 하이브리드·경차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구입 실적이 미흡한 실정임
  - ※ 중앙정부도 현재 20% 수준인 하이브리드 및 경차의 비율을 5년내에 50% 수준으로 확대 추진 중

◎ 에너지 절감 자동차 현황('07.12.31 현재)

구분	승용차 총 보유대수	에너지 절감 자동차 현황					
		소계		하이브리드		경 차	
합계	6,861	1,691	(24.6%)	486	(7%)	1,205	(17.6)
광역	1,494	222	(14.8%)	109	(7.4%)	113	(7.5%)
기초	5,367	1,469	(27.3%)	377	(6.9%)	1,092	(20.3%)

Ⅱ. 자치단체 전용차량 관리·운영 현황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전용 승용차는 248대('07.12.31일 현재)로서 평균 배기량은 시·도 3,183cc, 시·군·구 2,517cc임

  ※ 중앙부처 장·차관급 전용차량 배기량 : 평균 2,631cc

- 시·도 지사 전용차량 중 2,800cc급 이상 15대로 최근 대형화·고급화 추세

◎ 자치단체의 배기량별 관용차량 현황('07.12.31 현재)

구분		계	3,600cc이상	3,000cc이상	2,800cc이상	2,500cc이상	2,500cc이하
자치단체	합계	248	7	45	31	82	83
	광역	16	3	9	3	1	–
	기초	232	4	36	28	81	83
의회	합계	248	5	24	25	81	113
	광역	16	3	9	1	2	1
	기초	232	2	15	24	79	112

Ⅲ 에너지 절감을 위한 관용차량 관리·운영 개선 방안

① 지방자치단체장 전용차량의 지나친 대형화·고급화 지양 및 재활용

- 자치단체장의 전용차량은 국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을 참고하여 구입·교체

  예) 시·도지사 3,300cc급, 시장·군수·구청자 2,800cc급

  ※ 국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 : 장관급 3,300cc급, 차관급 2,800cc급 수준

- 전용차량 교체시 사용 가능한 차량은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재활용
  - 대형 및 중형승용차를 배정하고 있는 특수업무분야 등에 전용 차량 재활용
  - 시·도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간 관리전환 활성화

② 에너지 절약형 차량 구입 확대

-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이브리드 및 경차 등 에너지 절약형 차량 확대계획 수립·추진
  - 교체 대상·시기·방법, 대체차량 선정, 예산확보 방안, 유류사용량 절감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 시행

- 내구연한 경과로 업무용 차량 교체 시 에너지 절감차량으로 전환
  - 중·대형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수차량을 제외하고는 하이브리드 또는 경차 등으로 구입

    예) 중형(1,800cc) → 하이브리드 소형(1,300cc) 또는 경차(1,000cc이하)

  - 일반업무용 차량 교체·구입 시 50%이상을 하이브리드 차량 및 경차로 확보

    ※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의 보유대수가 일반업무용 총 차량수의 50%를 초과한 경우는 제외

- 향후 5년내(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및 경차 등 에너지 절감 차량 보급비율을 50%수준으로 확대

2007년 말 현재	2009년	2012년
24.6% (1,687대)	30% (2,058대)	50% (3,430대)

※ 자치단체별로 년도별 교체 계획을 감안하여 수립

- 일반업무용 승용차량(중·소형 및 경형)의 정수를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및 경차 전환 목표치 산정·구입

◎ 하이브리드 및 경차전환 목표치 산정방식(예시)

'08～'09년 교체 차량 정수	하이브리드 및 경차 등 전환 목표(50%)	'08년	'09년	비고
2～3대	1대 이상	1대		
4～6대	3대 이상	1대	2대	
7～8대	4대 이상	2대	2대	
9～11대	5대 이상	2대	3대	
12대 이상		20%이상	30%이상	

※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하이브리드 및 경차 전환 대상차량 선정 추진

하이브리드 및 경차 구입 관련 지침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 지침 제28조제3항(국무총리 지시 제2007-5호)
-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③ 관용차량 운행 억제 방안 마련·시행

- 출·퇴근 시 대중교통 및 자전거 타기 운동 등 적극 전개
  - 간부급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홍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으로 확대
  -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등 지역·기관특성에 맞게 추진

- 관용차량 운행기준 마련 시행
  - 상수도 민원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차 제한
  - 관내·외 출장 시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 승용차 함께타기(카풀제), 통근버스 운영 등

- 업무용차량 임차, 콜택시제 도입 등 지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 지방청사 등 관공서 출입 차량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적극 시행 등

④ 관용차량 관리·운영실태 점검·공표

● 매년 각 자치단체별 관용차량 현황 및 에너지 절감 차량 구매·운영실태 공시 예정

-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 및 차량 종류·가격, 예산절감 현황 등

※ 자치단체별 하이브리드 및 경차 전환·확대, 전용차량 운영실태 등 포함

● 특히, 지방자치단별 정부업무평가시 에너지 절약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등 재정인센티브 제공 예정

예)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실적 평가」 등

Ⅳ.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이브리드 및 경차전환 자체계획 수립(6.27)

- 자체계획 수립시 연도별 교체대상, 교체시기, 교체방법, 하이브리드 및 경차 전환차량 선정 방법, 유류량 절감, 예산확보 방안 등 포함

● 에너지절약형 차량 전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6.30)

- 시·도는 시·군·구 자료 취합하여 제출[서식 1 참조]

● 관리대장 기록 등 전용차량 관리·운영 철저

참고 1 자치단체 관용차량 보유현황(2007.12.31일 현재)

① 총괄

구분	합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의회의장	기타			
합계	34,578	6,861	248	263	241	6,109	3,802	10,686	13,229
광역	10,449	1,494	16	31	16	1,431	886	1,358	6,711
기초	24,129	5,367	232	232	225	4,678	2,916	9,328	6,518

② 승용자동차 현황

광역(총괄집계)

구분	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비고
계	1,494	137	401	464	113	379	
서울	282	9	70	105	30	68	
부산	88	8	18	49	2	11	
대구	66	8	13	23	9	13	
인천	109	5	25	34	24	21	
광주	71	11	26	14	8	12	
대전	80	17	26	23	1	13	
울산	66	8	13	23	9	13	
경기	184	10	32	72	23	47	
강원	94	9	27	23	2	33	
충북	57	6	12	16	1	22	
충남	58	9	18	15	1	15	
전북	60	6	26	14		14	
전남	66	7	30	8		21	
경북	62	6	12	8		36	
경남	54	12	24	7	2	9	
제주	97	6	29	30	1	31	

기초(총괄집계)

구분	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비고
계	5,367	455	768	1,424	1,092	1,628	
서울	713	62	112	247	222	70	
부산	149	18	44	24	13	50	
대구	92	12	24	22	6	28	
인천	194	7	29	65	42	51	
광주	60	5	19	22	10	4	
대전	55	4	16	18		17	
울산	71	11	9	13	19	19	
경기	1,585	83	106	457	587	352	
강원	323	63	36	59	19	146	
충북	209	12	40	62	3	92	
충남	253	19	74	69	36	55	
전북	238	21	42	84	22	69	
전남	364	32	76	100	7	149	
경북	573	53	64	91	23	342	
경남	424	53	59	77	70	165	
제주	64		18	14	13	19	

※ 승용차 종류(자동차관리법 기준)

– 대형(2,000cc 이상), 중형(1,500cc이상), 소형(1,000cc이상), 경형(1,000cc미만)

참고 2 자치단체 하이브리드 및 경차보유 현황(2007. 12. 31기준)

구분	합계	광역단체			기초단체		
		소계	하이브리드카	경차	소계	하이브리드카	경차
합계	1,691	222	109	113	1,469	377	1,092
서울	429	93	63	30	336	114	222
부산	24	2	0	2	22	9	13
대구	24	10	1	9	14	8	6
인천	116	33	9	24	83	41	42
광주	23	11	3	8	12	2	10
대전	10	6	5	1	4	4	0
울산	28	9	0	9	19	0	19
경기	837	51	28	23	3	199	587
강원	21	2	0	2	36	0	19
충북	4	1	0	1	22	0	3
충남	37	1	0	1	7	0	36
전북	22	0	0	0	23	0	22
전남	7	0	0	0	70	0	7
경북	23	0	0	0	13	0	23
경남	72	2	0	2	70	0	70
제주	14	1	0	1	13	0	13

※ 하이브리드카 통계는 에너지관리공단 자료 임

(8) (국토해양부) 보도블럭 교체기준

- 담당기관 및 부서 : 국토해양부 도로환경과
- 통보일자 : 2007. 5
- 문 의 처 : (02) 2110-3259

① 업무개요

- 보도의 설치 :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

※ 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6조(보도) ①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근거

- 도로법 제37조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206호)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 2007. 5)

* 보도교체 : 일정한 구간의 보도 노면을 전면 재포장하는 행위

보도굴착 : 지하매설물(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공사를 위해 소규모 범위의 포장 및 노반을 파는 행위

---

1) 제16조(보도) ①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補修)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면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업무처리절차

□ 보도의 설치계획 수립

- 보도는 보행자 수요, 보행자 교통사고 이력, 보행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 계획을 수립
- 보도는 도로계획단계부터 설치타당성 검토가 바람직

○ 보도설치를 위한 일반적 사업추진 절차

설치장소 결정(보행수요 파악) ⇒ 보도설치 위치 결정(현장조사) ⇒ 보도설치 우선순위 결정(시급성 및 중요도 분석) ⇒ 보도 세부형식·구조 결정

□ 보도의 설치장소 결정

- 수립된 설치계획에 따라 결정하되, 시가화 지역에 우선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연결로 등 반드시 필요한 곳을 선별하여 설치

□ 현황조사 및 설치구간 결정

- 기본 보도설치 현황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도 설치구간의 위치를 결정
- 현장방문 및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보도설치

□ 보도의 설치의 우선순위 결정

-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감에 영향을 주는 평가항목을 선정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 구조 및 형식의 결정

- 보도의 종류·구조는 보행자 그룹, 보행목적 등의 보행특성에 따라 확보할 보도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유지 관리

- 보도포장은 내구성, 미끄럼 저항성, 평탄성, 투·배수성 등 기본적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 보도포장은 10년 이내의 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보도 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에 의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

④ 예산절감의 시사점

- 국민들의 관점에서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행정사례중의 하나가 바로 잦은 보도블럭 교체라는 지적
  - 무분별하게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시대적 분위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성, 쾌적감, 연속성 관점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 및 유지관리 필요
  - 다만,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강화된 보도블럭 교체주기와 교체주기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따라서,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시도·군도·구도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보도포장 교체주기가 10년인 점을 감안
  - 보도블럭 교체 굴착공사에 대한 예고제를 통해 병행굴착을 유도하는 등 교체사유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 예방 등

≪도로관리심의회 관련 규정≫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24조의9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1999.8.6〉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24조의9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8.6, 2007.1.5, 2007.6.28〉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상임이사
2.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4. 시도·군도·구도 :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8.6, 2007.6.28〉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2. 예산절감 관련 매뉴얼·서적·논문

(1) (국토해양부) 공공건설 사업비절감 매뉴얼

- 담당기관 및 부서 :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과
- 발간일자 : 2008. 7
- 문 의 처 : (02) 2110-6288

○ **게 시 처**

-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지방재정제도 포럼 연구회 (http://cafe.naver.com/lfssf/45)
- 광화문 지방재정등대_지방예산절감10프로 (http://cafe.daum.net/LGCS10)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검색

○ **주요내용**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개요
  - 공공건설 사업비 현황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방안
  - 사업비 절감팀 구축·가동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기준
  - 예산절감을 위한 10대 원칙
  - '08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 '09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심사요령
  - 사업비 절감 심사실적 작성요령
  - 사업비 절감 심사 체크리스트
  - 공통사항
  -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터널공, 포장공, 기타
  - 전기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2) (국토해양부) 공공건설 사업비절감 우수사례
(세금 아껴쓰기! 국민섬기기!)

- 담당기관 및 부서 :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과
- 발간일자 : 2008. 7
- 문 의 처 : (02) 2110-6288

○ **게 시 처**

-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지방재정제도 포럼 연구회 (http://cafe.naver.com/lfssf/45)
- 광화문 지방재정등대_지방예산절감10프로 (http://cafe.daum.net/LGCS10)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검색

○ **주요내용**

① 제도·기준을 개선한 사례 (3건)
- 고속철도 설계기준 개정
- 책임자율점검 기법 도입
-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분기기 설치 제도개선

② 신공법·신기술 도입 사례 (10건)
- 하천공사 호안공법 변경
- 강관말뚝 시공공법 변경
- 함선보수공사 공법 개선
- 항행기술 자체개발
- 한강제방 관통공법 변경
- RC옹벽→자연비탈화 공법 개선
- 연약지반 처리공법 개선
- 상수도관로 매설공법 변경
- 두호항 등표 설치공법 변경
- 파일항타 시공방법 변경

③ 창의와 혁신이 촉발된 사례 (19건)
- 임목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 연약지반 개량 토사석 유용
- 토취장 추가개발

- 폐도부지의 토석을 재활용
- T.T.P. 유용으로 남방파제
- 항만시설 보강방법 변경
-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활용
- 건설폐기물 재활용
- 공사중 잉여 발생암(岩) 공개매각
- 제방과 도로를 겸용 시공
- 순환 준설토사 재활용
- 준설모래 유용
- 준설토사 유용방법 개선
- 케이슨제작장 민간임대
- 준설암 유용으로 인한 지초치환사석
- 광역-지방상수도 연계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 혼합폐기물 분리처리
- 벨트컨베이어시스템 도입
- 공사용 등부표 재활용

④ 비합리적 관행 제거 사례 (7건)

- 감리제도 개선
- 공공요금(전기요금) 절감 대책 수립
- 도로 사업구역 조정
- 항로관제통신시설 시설임차료 절감
- 수요 재검증 등을 통한 역사규모 조정
- 터널 방수시트 불필요 구간 삭제
- 부두 외곽울타리 감시시스템 개선

⑤ 일하는 방식의 변경 사례 (10건)

- 평면선형 조정
- 부산항 RTGC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선
- 과다 설계된 측도 삭제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전기설비 통합 운영
- 청량리역 반복운전선 축소
- LCS 도입
- 민간사업자 직접 준설방식 도입
- 공종별 최저 단가제 도입
- 건설기술 Leading-up Program 추진
- 표준품셈의 적정성을 현장실사를 통해 개선

(3) (국토해양부) 보도 정비 사례집

- 담당기관 및 부서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 도로환경과
- 발간일자 : 2007. 5
- 문 의 처 : (02) 2110-8742, 8743

○ 게 시 처

-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지방재정제도 포럼 연구회 (http://cafe.naver.com/lfssf/45)
- 광화문 지방재정등대_지방예산절감10프로 (http://cafe.daum.net/LGCS10)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검색

○ 주요내용

- 보도의 설치계획 수립
  - 계획 수립 절차
  -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 현황조사 및 설치구간 결정
  - 우선순위 결정
  - 구조 및 형식 결정
  - 유지관리
- 보도정비 필요사례
  -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필요한 사례
  - 보도 최소 유효 폭 확보가 필요한 사례
  - 교통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사례
  - 기준에 부합되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례
  - 빗물을 원활히 배수시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사례
  - 보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례
  - 통행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사례
- 보도 정비사례
  - 식수대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 보도정비 사례
  - 주요시설간 보도정비 사례
  - 학생 통학로 보도 정비사례
  - 상습 토사 유입구간 보도 정비사례
  - 지형적 제약을 극복한 보도 정비사례

(4) (행정안전부) 앞서가는 세정시책 모음집

- 담당기관 및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발간일자 : 2004
- 문 의 처 : (02) 2100-3940

○ **게 시 처**

-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지방재정제도 포럼 연구회 (http://cafe.naver.com/lfssf/45)
- 광화문 지방재정등대_지방예산절감10프로 (http://cafe.daum.net/LGCS10)

○ **주요내용 : 자치단체별로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과세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행·추진중인 특수시책 사례 (244건)**

- 서울특별시 : 지방세 전자고지세 시행 등 24건
- 부산광역시 :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추진 등 32건
- 대구광역시 : 수기분고지서 발급프로그램 운영 등 9건
- 인천광역시 : 지방세 인터넷지로 납부제도 시행 등 9건
- 광주광역시 : 지방세 자동이체제도 시행 등 8건
- 대전광역시 : 폰뱅킹을 이용한 자동납부제 시행 등 22건
- 울산광역시 :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등 8건
- 경기도 : 도내 기업체 지방세 설명회 실시 등 35건
- 강원도 : 지방세 인터넷 자진신고·납부 시책 등 12건
- 충청북도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등 20건
- 충청남도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등 12건
- 전라북도 : 지방세 카드대출 납부제 등 6건
- 전라남도 : 홈페이지를 통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제 등 5건
- 경상북도 : 세무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운영 등 14건
- 경상남도 : ATM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등 9건
- 제주도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등 19건

(5)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분야 예산절감 우수사례집

- 담당기관 및 부서 :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현,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기획예산과)
- 발간일자 : 2005. 1
- 문 의 처 : (02) 3708-2317~8

○ **구 입 처 : 하이서울 북스토어(02-2171-2125~6),**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394-0337), 판매가 1만원

○ **주요내용(57건)**

① 공법 및 설계변경(28건)

- 용비교 램프가교 및 옹벽기초 설치공법 변경
- 남산3호터널 보수공법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 양평교 보수공사 시공시기 조정 등 공법 변경
- 마포대교 교각기초 설치 공법 변경
- 마포대교 우물통 설치공법 변경
- 마포대교 보강우물통 철근배근 변경
- 성수대교 진입로 선형변경
- 한강대교 수상장비 재활용 및 사업시기 조정
- 천호대교 미관보호공 보수공법 개선
- 잠실대교 슬라브 중앙접합부 처리공법 개선
- 반포대교 교면포장 및 점검사다리 시공방법 개선
- 광진교 확장공사 옹벽 및 세굴방지공 변경시공
- 을지로~마장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 서남권농수산물시장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 서울교확장공사 교량가설공법 변경
- 경인국도~구로가로공원간 도로개설공사 흙막이 보강시설 변경외 1건
- 양녕로 확장공사 회차로옹벽 높이 조정
- 교량기초 세출방지공법 변경으로 공사비 절감
- 지하철 집수정보호공 변경으로 공사비 절감
- 방음벽과 수림대 기능을 통합 방음동산 조성으로 공사비 절감
- U-Tum 차로내 집수정 배수체계 개선으로 비용절감
- 서울여성프라자 신축공사
- 시립창동운동장 실내수영장 지하배치
- 용산소방서 신축공사
- 마포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 통합 발주
- 기전설비 설계방식 개선에 의한 예산절감

- 동진교외 2개소 보수
- 성동교 보수공사

② 공사(사업)규모의 합리적 조정(7건)
- 동대문운동장 임시주차장
- 도로시설물 점검매뉴얼 작성대상 간소화
- 성수대교 본선 교각 세굴방지공 삭제
- 성산대교 수중우물통기초 보강방법 변경
- 자개발지구내(미아~정릉4) 도로개설공사
- 공사구간 중첩에 따른 상부도로 공사 삭제 시행
- 가시설의 지반 및 지형여건에 부합토록 축소 시공

③ 공사자재 변경개선(4건)
- 마포대교 교좌장치 변경 시공
- 서울교 교량난간 Type 변경으로 주변경관과의 조화
- 사가정길 확장공사 신자재 사용
- 교량점검시설 구조개선으로 공사비 절감

④ 건설자재 등 재활용(5건)
- 재생아스파틀 확대사용 예산절감
- 청계고가 철거시 발생한 신축이음장치 재활용
- 중랑천 월릉교 외 6개소 하부구조 보강공사
- 순성토의 시민사토 활용 및 사면절취 최소화
- 우면산 터널 발생암 원석대 공제로 예산절감

⑤ 자체직원 활용(설계, 감리) 등(3건)
- 건설공사 실시설계 자체시행으로 용역비 절감
- 당산철교 경관조명공사 예산절감
- 2003년도 한강교량 정밀진단

⑥ 기타(건설기계장비 운용 효율화) 등(10건)
- 가동률이 낮은 건설기계·장비 공동활용
- 자동차 전용도로 방호벽 세척방법 변경으로 비용절감
-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시공에 의한 예산절감
- 가양대교 경관조명 보수방법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 터널세척 품질관리규정 제정에 따른 예산절감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보상비 절감
- 양녕로 확장공사시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로 예산절감
- 도로시설물 콘크리트 보수단가 조정으로 예산절감
-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비 절감
- SEOUL 사이버 흙은행 정보센타 운영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사업의 예산절감사례 발표회

- 담당기관 및 부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발간일자 : 1999. 12. 17
- 게 시 처 : http://kref.naver.com/doc.naver?docid=178763

○ 주요내용

① 기술개발보상 관련제도 해설 및 적용사례

② 공공부문 사업 단계별 예산절감 대책, 공공 건설사업 수행 단계별 예산절감 대책

③ 외국의 사례 (일본의 신기술 지정 관련제도, 미국의 VE (Value Engineering)관련 제도)

④ 국내의 기술개발보상 관련제도(신기술지정제도, 기술개발보상제도, 예산성과금 제도, 설계경제성등 검토(VE ; Value Engineering) 관련 제도개선 방향)

⑤ 관련제도 운영의 개선(안)

⑥ 사업비 절감 사례

- 건설공사 예산절감사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종단선형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북2터널 갱구연장 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교량슬래브 거푸집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L형 측구 시공방법 개선으로 사업비 절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교량점검로 구조개선으로 유지관리 및 예산절감 효과 발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근거리 사토장 선정을 통한 예산 절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항행안전시설 신설공사시공에 따른 감리비 절감 (부산지방항공청)
- 중부내륙 고속도로 8공구 턴키공사 선형변경을 통한 경제적 고속도로 건설 (한국도로공사)
- 원가관리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및 대표적 예산절감 사례 (1.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등 11개사업지구 하·폐수 원단위 조정으로 사업비 절감) (한국토지공사)
- 원가관리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및 대표적 예산절감 사례 (2.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준설매립공법 개선으로 사업비 절감) (한국토지공사)
- 원가관리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및 대표적 예산절감 사례 (3. 청주용암2 택지개발사업 토사운반을 위한 가포장도로 개설기법 개발로 공사비 절감) (한국토지공사)

- 원가관리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및 대표적 예산절감 사례 (4. 부천상동 택지개발 사업 필요토량 사전 확보로 사업비 절감) (한국토지공사)
- 원가관리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및 대표적 예산절감 사례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안 개선으로 사업비 절감) (한국토지공사)
- 남강댐 저수지 수목제거범위 효율적 조정 (한국수자원공사)
- 군장(I)공업용수도 금강 횡단구간 관로 공동시행으로 예산 절감 (한국수자원공사)
- 소화설비 통합으로 업무개선 및 원가절감 (대한주택공사)
- 건설규제완화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상급수 시설개선 (대한주택공사)
- 인천국제공항 조경사업 예산절감 – 인천국제공항공사
- 포장실험시공을 통한 공사비 절감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
- 외자부품 재활용에 의한 예산절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교량안전시설물(방호벽) 구조변경에 따른 사업비 절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7)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 도로사업 토지보상비 급증에 따른 예산절감방안 연구

- 담당기관 및 부서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발간일자 : 2005. 12. 31
- 게 시 처 :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di.re.kr/)
  - KDI 발간물 - 연구보고서 검색

○ 주요내용

- 토지보상비 급증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비 관리현황 및 문제점
  - 정부고시사업 보상비 산정현황 및 문제점
  - 민간제안사업 보상비 관리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비 총사업비 포함방안
  - 개선방향
  - 실행가능성 평가 : Simulation
  - 개선시행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토지보상비 총사업비 포함시 실행방안
  - 재정지원금 산정
  - 토지보상비 관리
  - 토지보상비 예산체계

(8) (임성일 논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 집 필 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박사
• 발표일자 : 2008. 6. 19 (2008 지방재정세미나)
• 게 시 처 : 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http://www.klfa.or.kr/)
– 정보공간 – e-book 서비스

○ 주요내용

– 재정 효율성 관련 이론과 비효율적 재정운영 실태
◦재정 효율성의 개념
◦재정 효율성 관련 이론
◦예산과정별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발생원인

– 지방재정의 효율성 수준 측정
◦지방재정의 효율성 수준 측정 (지방재정분석 지표, DEA 기법)
◦지방재정지출과 규모경제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예산절감을 중심으로)
◦효율성 증진의 전제조건 – 비용산정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본접근 – 예산과정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분담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 방안
·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재정계획성의 개선
·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전담 역량 제고
· 재정 효율성 증진 프로그램 실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정 효율성 증진 방안
· 예산사업의 총체적 관리시스템 확보
· 규모경제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진
· 거래비용 감소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진
· 기술진보와 자체노력 제고를 통한 효율성 증진
· 효율성 증진의 벤치마크(benchmark)와 목표 설정
· 기타 방안

– 결론

(9) (윤주영 논고) 공공부문예산의 효율적인 절감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에 관한 통제를 중심으로

- 집 필 자 : 윤주영
- 발표일자 : 2005. 8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게 시 처 : 국립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
  – 자료찾기 – 소장자료검색 – 간략찾기

○ 주요내용

– 예산낭비 기준 및 개념, 예산감시활동 필요성 및 기구·유형

– 예산성과금제도를 통해 본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노력

– 부정부패 및 예산감시활동을 통해 본 예산낭비 실태

– 우리나라의 예산낭비 방지 및 시정기능의 실제

– 공공부문 예산낭비의 억제방안

◦ 공공부문 자체노력에 의한 예산절감 할인

◦ 예산제도 개혁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방안 개선

◦ 예산낭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시민참여의 제도화

3. 인터넷 웹사이트

(1) (행정안전부) 예산절감 인터넷 카페

- 재정고 지방 예산절감
  - http://lofin.mopas.go.kr
    - * 지방예산절감 소개
    - * 지방예산절감 제안
    - * 지방예산절감 사례·수기
    - * 지방예산절감 매뉴얼
    - * 지방예산절감 토론장
    - * 지방예산절감 제안 사이트

- 지방재정제도 포럼 연구회
  - http://cafe.naver.com/lfssf/45

- 광화문 지방재정등대_지방예산절감10프로
  - http://cafe.daum.net/LGCS10

(2) (기획재정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 http://www.mosf.go.kr

(3) (지방자치단체) 시·도 예산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신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예산절감참여방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실 (☎ 02-731-6141)
  - http://www.seoul.go.kr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051-888-2303)
  - http://www.busan.go.kr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053-803-2440)
  - http://www.daegu.go.kr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032-440-2241)
  - http://www.incheon.go.kr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062-613-2410)
  - http://www.gwangju.go.kr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042-600-3171)
  - http://www.metro.daejeon.kr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민예산참여방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052-229-2248)
  - http://www.ulsan.go.kr
- 경기도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 담당부서 :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 031-249-2832)
  - http://portal.gg.go.kr

- 강원도 홈페이지 예산절감제안 / 예산낭비신고
  - 담당부서 : 강원도 예산담당관실 (☎ 033-249-2121)
  - http://www.provin.gangwon.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예산참여·절감 아이디어
  - 담당부서 :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 (☎ 043-220-2211)
  - http://www.cb21.net
- 충청남도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 (☎ 042-251-2161)
  - http://www.chungnam.net
- 전라북도 홈페이지 신고센터
  - 담당부서 : 전라북도 예산과 (☎ 063-280-2125)
  - http://www.jeonbuk.go.kr
- 전라남도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
  - 담당부서 :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 (☎ 061-286-2520)
  - http://www.jeonnam.go.kr
- 경상북도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예산팀 (☎ 053-950-3768)
  - http://www.gyeongbuk.go.kr
- 경상남도 홈페이지 예산절감 제안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 055-211-2363)
  - http://www.gsnd.net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 (☎ 064-710-2311)
  - http://www.jeju.go.kr

(4) 기타 예산관련 인터넷 카페

- 예산회계실무
  - 운영자 : 서울시 강서구청 재무과 최기웅 (02-2600-6212)
  - http://cafe.naver.com/gangseogu
- 사업예산 포럼
  - 운영자 : 서울시 강서구청 재무과 최기웅 (02-2600-6212)
  - http://cafe.naver.com/ebudget.cafe
- 평택예산 카페
  - 운영자 : 경기도 평택시청 예산팀장 김명화 (031-659-5880)
  - http://cafe.naver.com/pt2880

주민의 세금을 아끼는
예산절감 길라잡이

발 행 일 : 2008년 9월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집 필 총 괄 : 지방재정세제국장 이 삼 걸
집 필·편 집 : 재정정책과장 김 현 기
지방예산팀장 김 광 용
재정정책과 행정사무관 홍성철, 장선정, 천상철,
김경원, 김종범, 김성수
재정정책과 주무관 구기선, 김승영, 박재삼, 박천일

도 움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주무관 명삼수, 회계공기업과 행정사무관 손중근
주무관 김종갑, 강동균, 함경수
지방세운영과 주무관 배영주, 자치제도과 주무관 이인환,
지역발전과 주무관 이정훈, 감사담당관실 주무관 이철우,
청사관리소 시설운영과 공업사무관 이영인
지방예산절감 지원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이삼주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백승천, 황진용, 함요상
경희대산업관계연구소 박채규,
지방재정공제회 신유호, 유정화,
자치복권협의회 신재식
서울특별시 양현모, 부산광역시 김귀재
경상북도 임동혁, 강원 태백시 이광영,
충남 서천군 김원기, 전북 장수군 장태호

인 쇄 처 : 아미고디자인 ☎ 02)2277-5043
http://www.amigodesign.co.kr

본 책자내용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02-2100-4108~4112